

日帝下水産團體의 機能과 性格에 關한 研究

The Functions and the Natures of Fishery Associations
under Japanese Colonialism

崔 正 鈞*
Jeong-Yoon Choi

目 次

- | | |
|-------------------------------|----------------------|
| I. 序 言 | 2. 水産組合의 機能 |
| II. 水産團體制度의 展開過程 | 3. 漁業組合聯合會의 機能 |
| 1. 水産團體制度의 變遷過程 | 4. 水産組合聯合會의 機能 |
| 2. 第1段階: 漁業令 時代(1912~1929) | 5. 中央組織의 機能과 形態의 變化 |
| 3. 第2段階: 朝鮮漁業令 時代(1930~1944) | IV. 水産團體의 性格 |
| 4. 第3段階: 水産團體統合 時代(1944~1961) | 1. 日帝下水産團體의 一般的 性格規定 |
| 5. 第4段階: 水産業協同組合 時代(1962~) | 2. 漁業組合 및 그 系統組織의 性格 |
| III. 水産團體의 機能 및 組織의 變化 | 3. 水産組合 및 그 系統組織의 性格 |
| 1. 漁業組合의 機能 | V. 結 言 |

I. 序 言

우리 나라 水産業分野에 있어서 漁民團體制度의 淵源을 따진다면 1910年代가 될 것이며, 日帝下의 水産團體가 곧 그것이다. 그러나 協同組合의 發達段階를 世界史的 觀點에서 다음과 같은 3段階로 나누어 볼 때 이것은 協同組合運動이 世界各國의 各 産業分野로 擴散·發展되는 第3段階에 該當된다고 하는 점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協同組合運動의 第1段階는 1820年代로 英國의 오웬(R. Owen)에 의하여 協同組合運動이 提唱되고 킹(W. King) 등에 의하여 그것이 實踐段階에 들어가기 시작한 時期이며, 第2段階는 1844년에 룻치데일 開拓者組合이 創設된 以來 이 運動은 英國에서부터 유럽各國으로 展開되기 시작하여 他大陸에까지 近代的인 協同組合運動을 擴大시켜 나갔던 20世紀初까지가 된다. 第3段階는 1910년에서부터 現今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며, 마지막 段階에 該當되는 이 3段階에 와서 協同組合運動은 世界到處에서 매우 活發하게 展開·發展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3段階를 거쳐 發展해온 世界協同組合運動의 그 最終的 段階에 該當하는 第3段階에 접어드는 時期에 비로소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도 日帝에 의한 他律的 官主導型의 組合이 誕生되었던 것이며, 所謂 日帝의 植民地 統治機關으로 登場된 漁業組合과 水産組合 등 日帝下水産團體가 바로 그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水産業에 있어서 古來로부터 多數漁民의 協同을 必要로 하는 「漁業契」 등의 自主的 漁民組織이 漁村에서 自生的으로 形成·發展되어 왔음에도 不拘하고 이것이 近代的 漁民

* 釜山水産大學 助教授

組織으로 成熟·發展되지 못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韓日合邦과 同時에 成立된 이러한 水産團體組織은 日帝의 植民地 支配過程을 거쳐 解放後에도 繼續 存續되어옴으로써 1960年代에 이르기까지 水産業協同組合의 發足까지 沮止시켜 왔던 것이며, 發足된 水協의 組織과 運營制度에까지 커다란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그것은 制度, 組織, 運營方式 및 財政的 諸側面에서 오늘날 水協의 母體的 成立基盤을 提供한 水協發足史를 통해서도 能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日帝初期에서부터 植民地水産政策의 일환으로 誕生된 日帝下 水産團體는 解放後 水協의 發足直前까지 半世紀동안 우리 나라 漁村을 支配해 왔던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世界的으로 發達해 온 協同組合運動이 時代的, 發展段階의 側面에서 第3段階에 처해 있는 歷史의 背景下에서도 우리 나라 漁村의 協同組合運動은 實質적으로 그의 第1段階成立의 胎動조차 볼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近代의 水協制度의 樹立以後에 있어서까지 이러한 日帝下 水産團體의 制度的 矛盾과 機能上의 脆弱點은 健全한 水協育成을 沮害해 온 諸問題點으로 되어 왔다.

그러므로 水協制度의 樹立과 이에 의거한 水産業協同組合組織의 發足を 契機로 日帝下 水産團體는 舊殼을 完全 脱皮하고, 舊制度의 矛盾이 完全 拂拭된 自主的 水産團體運動의 新紀元을 맞이한 것이 되지만 실제 水協機能의 展開過程에서 舊水産團體制度의 影響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위는 實際로 日帝水産團體制度의 어떠한 面들이 現水協制度에 影響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알아 하여 日帝下 水産團體의 樹立과 그 展開過程을 把握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制度의 展開過程에 따라 成立發展해 온 水産團體의 機能을 分析함으로써 舊水産團體의 性格이 究明될 것이며, 그의 制度的 機能의 矛盾을 理解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作業은 水産業發展의 推進主體로서, 그리고 全漁民의 經營改善과 所得增大를 위한 機能團體로 成立된 現水協에 대한 組織과 그 機能의 새로운 展開方向을 整立함에 있어서 하나의 指針을 提供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水協史를 論議함에 있어서 舊水産團體가 單純한 前身團體 혹은 그 母體的 役割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치고 있었던 水協의 前身團體에 대한 올바른 認識을 갖게 하는데 있어서도 價値있는 作業이 될 것이다.

Ⅱ. 水産團體制度의 展開過程

1. 水産團體制度의 變遷過程

水産團體制度란 漁業者의 事業圖謀, 漁村의 開發, 漁場의 管理·調整 등을 目的으로 하는 水産業 從事者들의 構成團體에 대하여 그의 設立과 活動 및 運營을 保障하고 助成하며 規制해 나가는 各種의 法律制度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水産團體에 관한 法制의 成立을 처음 보인 것은 1911년의 漁業令이며, 以後 水産團體制度는 朝鮮漁業令의 成立과 水産團體에 대한 諸施策이 따르게 되면서 많은 變遷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2년의 水産業協同組合法 成立을 契機로 하여 우리 나라의 水産團體制度는 그의 最終的인 整備를 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過程은 制度의 創設以來 半世紀의 歷史를 거치는 것이 되므로 그간의 長久한 期間 동안에 나타난 團體組織에 대한 制度上의 特徵을 보다 잘 理解하기 위해서는 一定한 段階別로 이

를 나누어 把握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制度의 變遷 혹은 組織의 成長過程을 一定한 段階別로 區分하는 것은 그 指標가 多樣하므로 여러 角度에서 이를 區分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制度의 創設, 改廢 등을 통하여 水産團體에 重大한 變化를 招來한 事項들을 中心으로 하여 그 過程을 다음과 같은 4段階로 크게 區分해 보는 것이다.

第1段階：漁業組合등 水産團體의 設立과 그 活動을 認定한 制度의 創始 및 組織의 創設期(漁業令 時代)

第2段階：漁業組合 및 水産組合의 組織에 커다란 變化를 가져오고, 機能의 強化를 要請하게 된 1930年以後의 朝鮮漁業令 時代

第3段階：水産團體의 系統組織에 大變革이 加해지고, 水産團體에 대한 政策機能을 強化하여 團體의 變質을 招來한 1944年以後의 水産團體統合 時代

第4段階：漁業의 民主化와 漁民의 自主·自律性을 바탕으로 한 1962年以後의 水産業協同組合法の 時代

以上과 같은 4段階의 過程을 거쳐 變遷해온 水産團體制度에 있어서 언제나 거기에 中心이 되고 根幹이 되어온 것은 漁業組合系統의 團體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漁業組合과 水産組合의 組織과 運營 및 그 機能에 變化를 가져오고 影響을 미친 制度를 中心으로 이를 考察코자 하는 것이며, 그 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他系統의 水産團體制度에 관해서도 言及코자 한다.

2. 第1段階：漁業令 時代(1912~1929)

水産團體의 設立이 制度的으로 保障된 것은 1911년에 制定되고 1912년부터 施行에 들어간 漁業令의 樹立以後이다. 그러나 漁業令은 漁業의 發達과 社會經濟的 諸變化에 따라 大幅的인 改正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다시 朝鮮漁業令을 制定하게 하였으며, 여기에 따라 水産團體는 또다시 組織과 事業에 커다란 變化가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水産團體制度의 第1段階는 制度의 創設을 가져온 漁業令의 時代를 말한다. 具體的으로는 最初로 水産團體의 設立과 形態를 規定하고 運營方式과 基本機能을 定한 漁業令의 樹立에서부터 朝鮮漁業令이 誕生되는 1929년까지의 約 18個年의 期間이 여기에 該當된다.

이 期間은 水産團體制度의 樹立과 創設된 制度가 試行錯誤를 蹈으면서 앞으로의 改善에 對備하는 水産團體의 初期段階에 該當한다. 그리고 社會經濟的으로는 日本資本의 漁業分野에 대한 本格的 活動이 開始된 時期이며; 政治的으로는 韓日合併이 되고, 日帝의 植民地統治가 시작되는 初期의 過程이다. 이때 樹立된 代表的인 水産團體制度로서는 漁業令과 漁業組合規則 및 水産組合規則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이 水産團體의 基本制度가 되어 여기에 의해 미묘소 漁業組合과 水産組合의 設立이 制度的으로 認定되고 그의 活動을 保障받게 된 것이다.

漁業組合規則과 水産組合規則은 漁業令에 根據를 두고 制定된 水産團體의 基本法規로서,¹⁾ 漁

1) 漁業令은 水産制度의 基本法으로서 1911年 6月에 制定되고 1912年 4月 1日을 期에 實施되었는데, 本文 29條와 附則 7條로 構成되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 第16條~第19條까지의 4個條가 漁業組合과 水産組合의 設立關係를 規定한 條文이다.

業令의 施行과 同日字로 公布施行되었으며, 이 가운데 漁業組合規則은 本文 14條와 附則으로, 水産組合規則은 本文 29條와 附則으로 各各 構成되어 있었다. 兩規則의 重要한 內容은 組合의 區域, 設立, 役員構成, 總會, 經費負擔 및 財産管理 등에 관한 原則과 方法 및 그 節次에 대한 規定인 것이다. 兩規則間의 差異는 漁業組合規則은 地區別 組織을 原則으로 하고, 地區內의 漁業者만이 組合員이 되며, 漁業權의 管理와 여기에 必要한 共同施設事業의 實施 등에 關해 規定하고 있는데 대하여, 水産組合規則은 特定의 漁業 및 이에 關聯되는 事業者에 의한 構成團體, 組合區域의 非制限, 營利事業의 禁止 등을 規定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와 같은 水産團體制度의 樹立으로 漁業組合과 水産組合의 公式的 設立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1912년부터 漁業組合과 水産組合은 그의 設立에 着手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制度樹立後 約 10年 間에 漁業組合은 103個가, 水産組合은 6個가 全國의으로 誕生되었던 것이며, 1922年以後 이러한 水産團體의 組織活動은 急進展되었다. 水産團體制度 施行初期에 있어서 設立된 組合의 年度別 普及 推移를 보면 다음 <表 1>과 같다.

<表 1> 漁業令施行初期에 있어서 水産團體設立 狀況

	漁業組合	水産組合	計	備 考
1912	1	1	2	水産團體制度 施行初年
1913	14	1	15	
1914	36	2	38	
1915	41	2	43	
1916	46	2	48	
1917	53	6	59	
1918	62	6	68	
1919	72	6	78	
1920	79	6	85	
1921	89	6	95	
1922	101	2	103	

資料 : 水産廳, 韓國水産史, 1968, p. 401.

漁業令의 實施로 水産團體는 全國의으로 設立이 活發했으나 이의 普及을 더욱 促進시키기 위하여 日帝는 後續措置로서 1922年 4月에 漁業組合補助規則을 制定·公布하고, 1928년에는 組合規則의 一次改正을 보게 했다. 漁業組合補助規則은 漁業組合에 대하여 設立補助金과 經費補助金を 支援하는 것을 骨子로 하는 法規인 것이다. 補助金支援은 事業費補助金과 人體費補助金으로 나누어, 이 가운데 新設組合에 대해서는 1個組合당 5百圓씩을 3年間 補助하며, 既存組合에 대하여는 販賣事業을 獎勵하고, 理事의 人件費 등을 補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²⁾ 이 補助規則이 水産團體에 미친

2) 漁業組合補助規則(1922. 4. 27), 第2條~第4條 참조.

여기에서 補助對象組合은 다음과 같이 定하였다.

- ㄱ. 組合員數가 百人以上 일 것
- ㄴ. 組合員全體의 年間 總漁獲高가 2萬圓以上일 것
- ㄷ. 組合員全體漁獲高의 2/3以上을 共同販賣할 것
- ㄹ. 理事給料가 年 千圓以上일 것

日帝下 水産團體의 機能과 性格에 關한 研究

影響은 特히 漁業組合組織을 促進하고, 販賣事業을 強化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1921년까지 89個組合이었던 漁業組合數는 1922年末에 101個로 불어나게 되었고, 1923년에는 33個가 다시 新設되어 모두 134個 組合에 達함으로써 2年 사이에 그 數는 45個로 大幅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漁業組合補助規則의 施行을 前後한 漁業組合의 設立狀況을 보면 다음 <表 2>와 같다.

<表 2> 漁業組合補助規則施行前後의 漁業組合數

	全南	慶北	慶南	平南	江原	咸南	其他道	計
1921	14	2	18	3	11	2	39	89
1922	20	4	23	3	11	2	38	101
1923	24	7	23	7	17	9	47	134
1924	26	8	24	7	18	9	48	140
1925	28	11	25	6	18	9	50	147

資料: 水産廳, 韓國水産史, 1968, p. 401.

1928년부터는 指定組合制度가 登場하여 水産團體에는 또한번 큰 變化가 일어났다. 日帝는 水産團體의 堅實한 發展을 통해 植民地水産政策을 보다 強力하게 實施해 나갈 目的下에서 朝鮮總督으로 하여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組合들을 指定하게 하고, 이러한 組合에 대해서는 政策的 育成을 포함과 동시에 運營을 支配해 나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指定組合은 役員任命과 業務運營이 道知事 權限下에 들어가게 되어 完全히 行政의 隸屬機關化하고 말았던 것이다.³⁾ 이 制度를 위해 1928년에 漁業組合規則을 改正하게 되었으며, 後에 水産組合에도 이것을 擴大하여 全組合을 行政補助機關으로 隸屬시켰다. 1929年度의 指定漁業組合現況을 보면 다음 <表 3>과 같다.

특히 이 時代에 樹立되었던 水産團體制度 가운데 變할 수 없는 것은 朝鮮水産會令의 制定이다.⁴⁾ 여기에 의해 設立된 水産團體가 곧 水産會系統의 組織이다.⁵⁾ 이것은 1923년에 制定·施行되었으며, 이로써 組合法律에 관한 以外の 法律에 의해서도 水産團體를 設立·運營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從來의 水産團體는 漁業者만을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이므로 政策遂行을 위한 機能發揮에 있어서 問題點이 많다 하여 植民地政策의 強化를 妨하기 위한 보다 強力한 水産行政補助機關의 要請에 따라 樹立된 새로운 水産團體制度였다.⁶⁾

이와 같이 漁業令時代의 18年間に 걸쳐 成立·變遷되어온 水産團體制度는 그 內容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 特徵으로 指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漁民組織의 民主的·自律的 發展이 抑制되고 그 대신 植民地政策機關인 漁業組合 및 水産組合이 創設된 점 ②이의 設立과 發展을 官主導로 誘發·推進시켰으며, 各種 水産團體의 組織과 運營은 韓

3) 이 制度의 目的을 組合의 堅實한 發展에 둔다는 것은 名目上的 것일 뿐 根本趣旨는 大部分이 朝鮮人으로 구성된 漁業組合에 대하여 自主·自律性을 抑制하고 漁村에 대한 植民地 支配體制를 더욱 鞏固히 하기 위한 데 있었다.

4) 이것은 以前에 이미 日本에서 發足한 水産會組織의 影響을 받아 取해진 水産團體改編制度이다.

5) 水産會 系統組織은 朝鮮水産會一道水産會로 形成되었다.

6) 水産會의 會員資格은 公共團體, 鹽業者, 水産物의 製造·販賣·保管業者를 除外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 졌다(朝鮮水産會規則, 1923. 2. 26 참조).

〈表 3〉 指定漁業組合現況 (1929)

	指定漁業組合	非指定組合	計
忠南	3(60)	2	5
全南	20(71)	8	28
慶北	5(38)	8	13
慶南	11(38)	18	29
黃海	1(12)	7	8
平南	3(33)	6	9
平北	5(2.5)	15	20
江原	8(61)	5	13
咸南	7(77)	2	9
咸北	16(73)	6	22
全北	—(0)	6	6
計	79(49)	83	162

資料：1929年 朝鮮總督府規則 第1號 및 第148號
참조

註：()內 數値는 構成比(%)임

國漁民의 權益保護와 生業의 安全을 꾀한다기보다는 植民地初期에 있어서 日本漁民의 韓國沿岸에 대한 土着永住를 支援하고, 이들의 漁業活動을 保障하는 데 優先을 두는 方向에서 모든 水産團體制度 및 그 政策이 運用되어 나갔다는 점, ③ 漁業令時代 末期에 와서는 水産團體에 대한 官僚的 支配를 더욱 強化하고 여기에서 더 發展하여 보다 強力한 政策遂行團體로 變貌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 第2段階：朝鮮漁業令 時代(1930~1944)

朝鮮漁業令에 의해 樹立된 水産團體制度 및 이 期間에 實施된 各種의 水産團體制度의 時期가 第2段階에 該當된다.

이 時代는 1930年에서 부터 1944年까지의 14 個年間이 된다. 이 期間에 水産團體制度는 大幅的 改革과 整備를 보았다.

漁業令이 施行되고 있었던 第1段階의 18年동안에 나타난 水産業의 顯著한 發展趨勢는 日帝初期에 樹立된 簡單한 漁業令의 改正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急速한 漁業의 發達과 社會經濟的 興件의 變化에 適應하지 않을 수 없는 客觀的 要請에 따른 水産制度改革의 產物로 나타난 것이 朝鮮漁業令이며, 7) 여기에 의하여 새로이 樹立된 水産團體制度가 곧 第2段階에 屬하는 水産團體의 規制法規가 된 것이다. 이것은 朝鮮漁業令과 여기에 根據를 두어 制定된 朝鮮漁業組合規則, 朝鮮水産組合規則 및 其他 水産團體에 관한 附屬法規⁸⁾로서 構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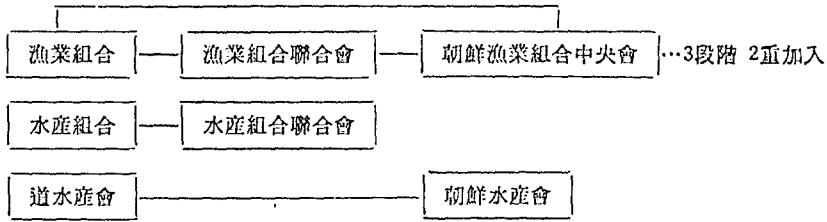
위와 같은 制度의 樹立·改正에 의하여 第2段階에서 보인 水産團體制度의 重要한 變化內容은 ① 漁業組合에 대한 經濟事業關係規程의 整備, ② 組合의 業務區域擴大, ③ 水産組合設立規定의 補完, ④ 組合總代會의 設置 및 副理事制度의 新設, ⑤ 漁業組合聯合會制度 및 中央會制度의 創設, ⑥ 漁業組合 系統組織의 3段階構造의 成立·誕生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水産團體制度의 變化에 따라 水産團體의 各級 組織에 있어서도 組織數의 增加, 系統體系의 完成, 組織整備 등의 變化가 있었으며, 經濟規模의 擴大에 따른 組合運營體制 및 運營方式에 있어서도 커다란 進展을 보였다.

이 時代에 있어서 成立된 水産團體組織의 形態와 系統漁業組合組織의 經營組織 및 水産團體의 設立狀況 등을 각각 보면 다음 〈그림 1·2〉 및 〈表 4〉와 같다. 〈그림 1〉에 의하면 全體 水産團體는 3系統 7形態가 存在하고 있었고, 漁業組合系統組織은 朝鮮漁業組合中央會를 頂點으로 하는 3段階 2重加入制

7) 朝鮮漁業令은 1929년에 制定되고, 1930年 5月 1日을 期해 施行되었으며, 總 84條로 構成되었다. 이 法律에서는 第43條에서 第60條까지 18個條를 水産團體에 對해 割愛하고 있는 것이다.

8) 重要한 附屬法規로서는 朝鮮漁業組合業務規程, 朝鮮漁業組合補助規則 및 朝鮮漁業組合定款 등을 들 수 있다.

度를 取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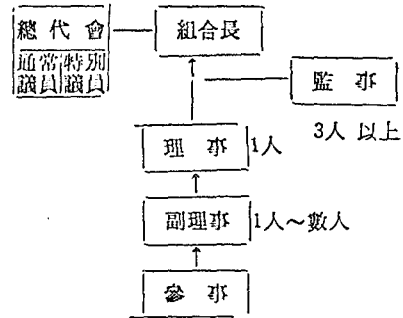


<그림 1> 朝鮮漁業令時代의 水産團體의 形態 및 系統組織

<表 4> 朝鮮漁業令施行前後의 水産團體設立狀況

	漁業組合	水産組合	計
1928	150	1	151
1929	162	1	163
1930	204	7	211
1931	211	9	220
1932	207	10	217

資料 : 水産廳, 韓國水産史, 1968, p. 401.



<그림 2> 朝鮮漁業令時代의 漁業組合機構

4. 第3段階 : 水産團體統合 時代(1944~1961)

水産團體制度의 展開程過에 있어서 하나의 中央組織을 中心으로 各種의 水産團體組織이 統合되어 單一系統組織으로 統一된 水産團體의 時代를 第3段階로 區分할 수 있다. 이 時期는 1944年에서 水協發足直前까지가 된다. 1944年에 朝鮮水産團體統合要綱에 의하여 各級 水産團體 및 機關은 大 大的인 統合을 보게 되는데, 1944年 4月 1日을 期해 單一中央組織인 朝鮮水産業會가 發足됨으로써 지금까지 여러 形態와 系統으로 分立되어 있던 水産團體는 單一系統으로 統合되기 시작한 것이다.

水産團體의 統合運動은 1943年에 水産組合聯合會가 解散되고 一部の 水産組合이 統合되어 24個에서 18個로 整備되면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나 本格的인 統合作業이 일어난 것은 朝鮮水産團體統合要綱을 發表한 1944年 2月 18日 以後이다. 水産團體를 왜 統合하여야 했으며, 어떠한 方向으로 統合할 것인가에 대한 論議는 當時의 水産團體의 多樣한 存在形態와 軍國主義 日本의 急迫한 戰時體制가 말해준다. 當時에 存立하던 水産團體로는 漁業組合系統과 水産組合系統 및 水産會系統의 3系統이 있었으며, 이것을 水産三團體라 불렀다. 그외에 朝鮮水産聯盟과 그의 下部組織을 통하여 漁村指導事業에 유사한 機能을 遂行하는 社會團體의 性格을 띤 團體도 있었다. 이들 水産團體는 實은 類似機能을 遂行하면서도 各各 獨自인 組織으로 分立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國家의 次元에서 볼 때 오히려 國力の 弱化를 招來하는 結果를 가져오는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弊端을 是正하기 위하여 日帝는 類似團體를 整備하고 그 機能의 統合을 必要로 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終戰을 앞두고 마지막 戰爭遂行을 위해 모든 國家經濟와 組織을 戰時動員體制로 再編成하는 統制經濟가 強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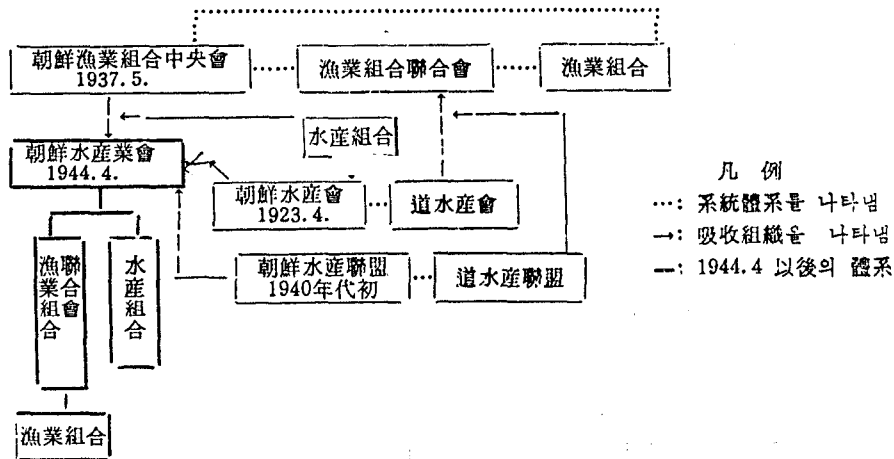
수 산 경 영 본 질

되고 있었으므로 國家管理下에서 強力한 單一中央組織을 中心으로 하는 모든 水産團體의 統合整備와 系統體系의 確立이 要請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이미 日本에서 모든 水産團體를 戰時體制에 順應할 수 있는 國家權力中心 機關으로 再編成하기 위하여 1942년에 水産團體統制令을 發表하고, 1943년에는 水産團體法을 制定하여 日本全體의 水産團體에 대한 大대의인 統合作業이 斷行된 그의 延長線上에서 展開된 것이다.

따라서 第3段階를 代表할 수 있는 水産團體制度의 하나는 前述한 朝鮮總督府가 1944年 2월에 發表한 水産團體統合要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의해 從前부터 存立해온 朝鮮水産會系統의 組織과 朝鮮民事令에 의한 朝鮮漁業組合中央會, 그리고 1940年代初에 國民總力運動機關으로 設立되어 있었던 朝鮮水産聯盟系統의 組織이 모두 解散되게 되고, 대신에 水産團體의 兩軸인 漁業組合과 그 聯合會 및 水産組合을 下部系統組織으로 하는 朝鮮水産業會가 1944年 4月 1日을 期해 社團法人으로 設立된 것이다. 이것은 官의 統制施策에 即刻의으로 好應하고, 水産團體의 綜合性, 統一性을 圖謀할 수 있는 中央統制團體로 삼기 위한 措置였다.

이를 契機로 水産團體組織은 朝鮮水産業會를 頂點으로 하는 하나의 垂直的 系統體系로 簡略하게 整備되었다. 그리하여 漁業組合의 聯合組織에 대한 二重加入制度를 廢止하고, 水産組合의 中央團體에 대한 會員資格이 保障되었을 뿐 아니라, 中央組織으로서는 前述한 朝鮮水産業會만을 唯一한 團體로 存立하게 하였다. 이러한 單一 中央團體制度는 解放後 水協中央會의 設立時까지 그대로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中央團體가 單一組織으로 存立해 온 것은 위의 統合措置에 의한 것이다. 統合에 의하여 形成된 水産團體의 系統組織을 圖示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第3段階初期의 水産團體系統組織

第3段階에 있어서 水産團體組織에 變化를 가져오게 한 또 하나의 重大한 措置는 1961年 6月 3日에 樹立된 海務廳의 水産團體整備廢合要綱이다.

第3段階는 日帝末期에서 水協發足前까지의 約 18年間에 걸쳐 實施되고 있었던 水産團體制度의 變遷過程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期間은 日帝以前과 日帝以後라고 하는 政治的 社會的인 커다란 變

9) 水産團體統合實施要綱(1944.2) 참조.

日帝下 水産團體의 機能과 性格에 關한 研究

化가 거듭되었으나 水産團體에 있어서만은 그 變化가 미약하며 과거의 制度가 1960年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것이 1961年 當時의 海務廳이 水産團體의 機能強化와 運營의 不振을 打開하기 위한 一大措置로서 水産團體의 系統組織에 變革을 加한 水産團體統廢合作業을 斷行함으로써 從來의 水産團體組織은 크게 再整備되게 된 것이다.

즉 1961年 6월에 着手된 水産團體統廢合作業을 통해 지금까지 162個로 存立하던 漁業組合을 88個로 整備하고, 16個 水産組合을 13個로 統合하였으며, 各道單位로 設立되어 있었던 漁業組合聯合會를 解散시켰던 것이다. 이로서 單位組合이 直接 中央組織에 會員으로 加入할 수 있게 되었고, 段階構造는 2段階 系統組織으로 壓縮되었다. 水協發足은 앞두고 이러한 團體組織에 대한 措置가 斷行되었던 것은 곧 朝鮮漁業令에 依據하여 施行中에 있던 水産團體制度의 잠정적 廢止를 意味하는 것이며, 漁業組合 및 水産組合에 대한 經濟團體의 體質轉換을 企圖하고 있었던 것이다 할 수 있다.

解放後의 水産團體組織의 變動을 보면 다음 <表 5>와 같다.

<表 5> 解放後 水産團體組織의 變動

		1945	1947	1950	1955	1961(統合前)	1961(統合後)	解放後新設	解放後廢合
漁業組合	京畿道	8	13	13	15	15	9	7	6
	忠南道	12	13	13	15	15	6	3	12
	全北道	7	5	5	10	10	4	3	6
	全南道	44	44	44	50	50	28	6	22
	江原道	10	10	10	14	14	10	4	4
	慶南道	36	33	35	38	39	19	3	20
	慶北道	13	13	14	14	14	7	1	7
	黃海道	12	10	13	—	—	—	—	—
	濟州道	—	3	4	5	5	5	2	—
	計	142	144	151	161	162	88	29	77
水産組合	19	14	15	16	16	13	—	3	
合計	161	158	166	177	178	101	29	80	

註 ① 1945年の 組合數는 正確한 統計는 아님

② 濟州道는 1946년에 全南에서 行政的으로 分離되었음

③ 黃海道는 休戰協定後 休戰線以南 組合을 京畿道에 編入시켰

資料 : 韓國銀行, 經濟年鑑, 1956. pp. II-157~161.

5. 第4段階 : 水産業協同組合 時代(1962~)

第4段階는 1962年 1月 20日에 制定된 水産業協同組合法과 同施行令에 의하여 同年 4月 1日부터 發足되기 시작한 水産業協同組合의 時代를 일컫는다. 이 時代의 成立을 契機로 비로소 우리 나라 水産團體는 眞正한 漁民의 民主的 自主團體로 成立·發展할 수 있는 新紀元을 맞이하게 되었다.

日帝의 植民地의 統治意圖와 官僚的 統制手段으로 存立되어 왔던 半官半民的 團體가 解放을 맞이한 후 17年이 經過하면서도 解體되지 않고 眞正한 漁民의 協同組合運動을 沮止시켜 왔던 것을 생각

하던 1962年 水産業協同組合制度의 樹立과 여기에 의거한 水産業協同組合의 發足이야말로 우리 나라 水産團體史上 빛나는 業績이라 아니 할 수 없다.

以上과 같은 特異한 歷史的 變遷過程을 겪어오면서 水産業協同組合制度로 最終 收斂하게 된 第4段階에 突入한 水産團體制度의 展望은 舊時代의 制度的 弊習을 完全 拂拭하고 自由民主主義社會에 豊富하게 適應할 수 있는 組合의 民主化, 協同組合理念의 徹底化, 漁民爲主의 團體機能擴大化를 基本課題로 삼아야 할 것은 當然한 歸結이다. 그러므로 새로이 誕生되는 水協法은 漁業協同組合에 대하여 從來의 基本的 中心機能이었던 漁場管理機能이 低下된 대신에 組合에 의하여 營爲되는 經濟事業을 中心의 位置에 두게 하였으며, 組合의 組織과 運營은 一切 漁民의 意志에 따르도록 하고 모든 組合活動이 漁民中心의 民主的 支配下에 들게 하였다. 말하자면 協同組合運動本來의 精神과 그 趣旨에 合當하는 組織과 組合運營이 保障되는 水産團體로 育成·發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水産團體의 機能 및 組織의 變化

1. 漁業組合의 機能

1) 漁業組合 機能의 二重性

(1) 漁業權管理機能

漁業組合의 漁業權管理機能은 1912年 漁業令의 施行에서 비롯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最初로 漁業組合이 設立된 것은 舊韓國漁業法에 의하여 誕生된 1908年의 巨濟 閉山加助漁期組合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그의 本格的인 設立이 制度的으로 認定된 것은 1911年 6月 6日에 公布되고, 翌年 4月 1日부터 施行된 總督府 漁業令에서이다. 既述한 바와 같이 當時의 朝鮮 總督府는 漁業令 第16條에 根據를 두고,¹⁰⁾ 本文 14個條와 附則으로 構成된 漁業組合規則을 制定·實施함으로써 漁業組合은 全國的으로 普及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以後로 漁業組合은 漁村의 唯一한 機能團體로 發展해 나갔다.

漁業權을 基盤으로 形成된 一定한 漁村區域內의 漁民을 그의 構成員으로 하여 設立된 漁業組合은 漁業令 第17條 第1項을 통하여 漁業組合은 「漁業權을 取得하거나 漁業權의 貸付를 받아 組合員의 漁業에 관한 共同의 施設을 管理함을 目的으로 한다」라는 設立目的에 따라 漁業權의 保有 및 그의 管理機能의 主體로 成立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漁業權管理로 因해 隨伴되는 共同施設까지 할 수 있도록 한 制度의 措置도 취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漁業組合이 漁場主體로 誕生됨에 따라 지금까지 權門勢家에 의하여 獨占的으로 占有·支配되어 왔던 沿岸漁場의 團體支配가 可能하게 되고, 新秩序에 의한 利用關係가 成立된 것이다. 그리하여 漁業組合이 保有하는 漁場數는 다음 <表 6>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初期의 600餘件에서 1927년에는 1,500件으로 增加하였으며, 1941년에는 무려 3,632件에까지 達하여 1940年代初에는 特定의 漁業權¹¹⁾을 除外한 全 漁業權이 거의 組合所有化하는

10) 漁業令 第16條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一定한 地區內에 居住하는 漁業者는 朝鮮總督府의 許可를 받아 漁業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

11) 一定한 水面에 魚類를 集合시키는 設備을 하여 經營하는 漁業은 이것을 漁業令施行規則 第17條에서 「第5種 免許漁業權」이라 規定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漁業組合의 享有를 制限하였다.

〈表 6〉 漁業組合의 漁業權 保有推移

年 度	保有件數	保有組合數	總組合數	組合當 平均保有件數	總免許漁業件數
1918	650	52	62	10.5	
1927	1,520	136	148	10.4	
1931	2,756	205	211	13.1	
1941	3,632	未詳	206	17.6	
1977	3,769	70	70	53.8	7,692

① 1960年以後의 保有狀況은 地區別 水協分이며, 漁村契保有的 漁業權은 모두 地區別 水協에 合算시켰을 資料: 朝鮮之 水産, 1977年度 組合現況 등.

現象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漁業組合의 「漁業權管理機能」이란 <表 6>에서와 같은 單純한 免許漁業權의 保有내지 그 取得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上記 漁業令 第17條 第1項이 規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漁業組合의 實質的 漁業權管理機能은 漁業權의 保有·取得은 물론, 保有漁業權의 生産的 民主的 利用을 위한 必要한 漁具내지 施設物을 組合員이 共同으로 하게 하며, 漁業作業의 協同化를 圖謀하여 漁場의 效率的 利用을 增進시킬 수 있는 一連의 活動을 漁業組合이 主管하면서 이를 擔當推進시켜 나가는 活動全體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漁業組合의 漁業權管理機能이란 地先漁民의 專用漁場을 確保하고, 여기에 대한 施設負擔의 共同化, 漁撈作業의 協同化, 利用의 全體化 및 資源의 共同管理를 包含한 一連의 活動을 漁業組合이 主體가 되어 推進시켜나가는 機能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漁業組合에 대하여 制度的으로 이러한 漁場管理機能을 賦與하게 된 根本趣旨은 生活手段의 全部를 漁業에 依存하는 地先漁民에 대한 生業保障과 漁村의 維持 및 그 經營에 目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元來 地先漁場은 漁村成立의 基礎이며, 地先漁民의 生活基礎인 것이므로 漁業資源의 管理와 그 保護의 合理化를 위해서도 漁民全體가 地先漁場을 組織的 自治的으로 共同管理케 하는 漁場管理制度는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에서와 같은 目的의 純粹性에 의해서 그것이 制度化되었다기보다는 1910年の 韓日合併을 契機로 植民地統治를 開始하게 된 日帝의 우리 漁村에 대한 組織的 合法的 收奪을 強化내지 合理化하기 위한 手段에 지나지 아니 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이미 合併以後 다른 모든 分野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水産業分野에 대해서도 그들의 植民地政策 遂行目的에 符合되는 制度의 樹立에 腐心하였던 日帝는 그 최초의 作業으로서 1911년에 漁業令을 만들었던 것이며, 이때 이미 日帝는 地先漁場 管理를 위한 支配主體로서 末端的 行政機關과 다른 없는 漁業組合의 設立을 前提로 하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1911年 6月 制令 第6號로서 公布되고, 翌年 4月 1日부터 施行을 보인 前記 漁業令 第16條를 통하여 朝鮮總督府는 漁業組合의 設立과 그 普及을 獎勵하고, 同法令 第3條 但書條項을 통하여 地先部落民에 의한 團體以外의 者에 대해서는 免許漁業의 處分을 制限했던 것이다.¹²⁾

12) 漁業令 第3條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수 산 경 영 본 집

이와 같은 制度的 措置가 奏効하여 <表 6>에서 본 바와 같이 漁業組合의 漁業權保有推移는 組合數의 增加와 더불어 增大하기 시작하였으며, 漁業組合에 의한 沿岸漁場의 獨占的 支配體系가 더욱 強化되어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免許漁業의 種類와 漁業權의 數가 增大됨에 따라 이러한 漁業組合의 漁場保有範圍는 더욱 擴大되어 漁業組合의 漁業權管理團體로서의 存立意義는 더욱 確固히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當時 漁業令이 規定한 免許漁業의 種類와 그 範圍는 다음 <表 7>과 같다. 여기서 第6種 免許漁業 또는 專用漁業의 漁業權은 特히 漁業組合의 獨占的 取及對象이 되었던 것이다.

<表 7> 漁業令에 規定된 免許漁業의 種類¹³⁾

種 類	漁 業 方 法	朝鮮漁業令 ¹⁴⁾
1. 第1種 免許漁業	一定한 水面에 漁具를 建設 또는 敷設하고 一定한 漁期內에 이를 定 置하여 하는 漁業	定置 漁業
2. 第2種 免許漁業	一定한 水面을 區劃하여 養殖을 하는 漁業	養殖 漁業
3. 第3種 免許漁業	海濱의 一定한 場所에서 一定한 漁期內에 反復하여 漁網을 曳揚 또는 曳寄하여 하는 漁業	定所曳網漁業
4. 第4種 免許漁業	一定한 水面에서 一定한 漁期內에 反復하여 漁網을 建設 또는 敷設하 여 하는 漁業	定所敷網漁業
5. 第5種 免許漁業	一定한 水面에 魚類를 集合시키는 設備을 하여 經營하는 漁業	定所集魚漁業
6. 第6種 免許漁業	前 各號에 掲載한 것을 除外한 以外에 水面을 專用하여 하는 漁業	專用 漁業

(2) 漁業組合 共同施設事業의 經濟的 機能化

組合의 經濟的 機能은 組合員의 事業이나 生活의 向上을 위하여 組合의 責任下에 經濟的 事業活 動을 營爲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初期에 있어서 漁業組合의 經濟的 機能은 共同施設事業을 통하여 이것이 發揮되어졌으며, 그것도 初創期에는 이러한 機能이 漁業에 관한 共同施設로서만 그치고 있었다. 다시 말해 漁業令 第17條 第1項의 規定은 組合員의 經濟에 관한 共同施設까지도 行할 수 있는 抱括規定이 아닌 「漁業에 관한 共同施設」만을 目的으로 한다고 規定했기 때문에 그의 經濟的 事業의 廣範圍한 實施는 이것이 자연 制限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經濟事業的 性格을 갖는 漁業組合의 共同施設 事業」이란 다음과 같다.¹⁵⁾

- ① 漁獲物 혹은 그 製品의 共同販賣
- ② 漁獲物 혹은 그 製品의 共同運搬

「水面을 利用하여 漁業을 하는 權利를 얻으려고 하는 者는 朝鮮總督府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但 前項의 免許는 漁村의 經營 또는 維持를 위하여 必要한 境區를 除外하고는 이를 賦與하지 않는다」

13) 이와 같은 免許漁業種類的 區分은 正確히 漁業令施行規則 第17條에 규정하고 있다.

14) 朝鮮漁業令 第6條 第1項 참조.

15) 이러한 漁業組合의 共同施設事業의 內容例示는 1922年 4月 27日 總督府令 第74號로 制定된 「漁業組合 補助規則」에서 처음 規定하였다.

- ③ 漁獲物 共同製品加工施設
- ④ 漁船 簡易碇泊施設
- ⑤ 共同漁網所 혹은 共同創庫施設
- ⑥ 漁業改善에 關한 施設(模範漁船·漁具의 製作 또는 買入 등)
- ⑦ 簡易救濟施設
- ⑧ 增殖을 위한 共同施設

[1925. 7. 20. 官通牒 第50號 참조]

그러나 初期에 있어서 이와 같은 漁業組合의 共同施設事業에 대한 經濟事業的 展開는 不振했다. 그 理由는 組合의 資金不足, 推進機能의 微弱 등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④ 經濟事業의 共同施設의 擴大的 實施에 대한 制度的 制限, ⑤ 共同施設事業의 具體的인 種類와 그 範圍의 規定에 있어서 經濟的 性格의 事業에 대한 規定의 不明確性, ⑥ 이의 實施方法에 대한 制度的 規定의 未備, ⑦ 與件의 未成熟 등이 기본 原因이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組合制度의 成立以後 10餘年이 經過하면서도 가장 重要한 經濟事業으로서 共同販賣事業을 行한 組合數는 全體 90個 가운데 10餘個 組合에 不過하였다.

共同施設에 대한 種類와 그 內容을 明示함에 있어 漁業令制定 當時에 있어서는 具體的으로 經濟的 事業을 規定한 바가 없었다는 것은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1912年 10月 1日에 官通牒 第 79號로 示達된 漁業組合規約 第31條 規程을 통해 밝히고 있는 共同施設事業의 範圍는 다음 <表 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遭難救濟를 위한 單純한 相互扶助活動에 지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表 8> 漁業令 時代에 있어서 漁業組合 共同施設事業의 內容

1. 組合員 또는 그 家族의 遭難으로 因하여 漁具 또는 漁船을 喪失·毀損한 때에는 그 新造費 또는 修費의 補助
2. 組合員 또는 그 家族의 遭難으로 因하여 負傷하고, 疾病에 걸리고 혹은 死亡한 때에는 그 醫療費 또는 葬禮費의 補助 혹은 遺族의 扶助
3. 組合員 또는 그 家族이 漂流한 때에는 그 歸鄉旅費의 補助
4. 遭難者를 救助한 者에 대한 賞與金 또는 謝禮

資料: 漁業組合規約(1912. 10. 1 制定)

그러나 漁業組合補助規則의 實施以後 組合員數가 1百人以上에 達하거나, 全組合員의 年間 總漁獲高가 2萬圓以上에 達할 경우 國家는 組合에 대하여 補助金을 交付한다는 漁業組合 補助政策에 의하여 漁業組合의 共同施設事業은 점차 擴大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러한 補助政策에 의해 獎勵된 것은 共同販賣事業이었다. 그리하여 水産物共同販賣事業을 實施해 나가는 組合數는 크게 늘어나 1920年代末에 이르러서는 그 數가 114個 組合에 達함으로써 거의 全組合이 實施하는 바가 되었으며, 總漁獲高의 41.1%가 組合의 共販所를 거쳐 去來되었다(<表 9> 참조).

이와 같은 組合의 販賣事業이 擴大되어 나간 데는 漁業의 發達과 漁村經濟의 發達이라고 하는 與件의 成熟도 無視할 수 없었다. 日帝는 漁業組合의 共同施設事業이 점차 擴大化해 감에 따라 自國

수 산 경 영 본 집

〈表 9〉 1920년대末 漁業組合의 共同販賣事業 實施狀況(1927)

	組合數	實施組合數	漁獲高(千圓)	委販高(千圓)	委販高 比率(%)
忠 南	4	4	130	47	36.2
全 南	28	28	3,366	2,366	70.3
平 南	6	2	198	33	16.7
平 北	19	7	738	155	21.0
江 原	10	10	739	348	47.1
咸 南	10	9	1,717	523	30.5
咸 北	21	20	2,693	586	127
全 北	6	4	264	51	19.3
慶 北	13	11	2,147	826	38.5
慶 南	27	19	7,159	2,915	40.7
京 畿	8	—	—	—	—
計	152	114(75%)	19,151	7,350	41.0

資料：漁業組合에 關한 調査(1927)

의 境遇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¹⁶⁾ 朝鮮의 漁業組合에 대한 政策에 있어서도 1926年 1月 26日의 朝鮮 漁業令 制定을 통해 이에 대한 制限의 法律規定을 改正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漁業組合은 漁業權을 取得하거나 漁業權의 貸付를 받아 組合員의 漁業에 關한 共同의 施設을 함을 目的으로 한다」는 漁業令 第17條 規定을 朝鮮漁業令 第47條 第2項을 통하여 「漁業組合은 組合員의 漁業을 위하여 漁業權을 取得 또는 漁業權을 貸付받고 또한 組合員의 漁業 또는 이에 關한 經濟 혹은 救濟에 필요한 共同의 施設을 함을 目的으로 한다」로 改正한 것이다. 이로써 組合의 機能은 漁業權管理機能과 經濟的 機能으로 分明히 兩分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經濟的 機能은 만드시 漁業에 關한 共同施設事業以外에 組合員의 經濟나 救濟에 關한 共同施設事業까지도 包含시키게 됨으로써 經濟事業을 위한 組合制度는 한층 整備를 보인 것이다.

1930年代에 와서는 附屬法規로서 漁業組合規則을 制定하고,¹⁷⁾ 共同施設事業에 대해서는 前記 8個 項目을 統合하여 다음의 6個項目으로 整備하였다. 初期와 다른 점은 信用事業이 添加되고, 組合員의 利用에 支障을 招來하지 않는 範圍에서 非組合員漁民에 대한 利用도 이를 許用하게 한 것이다. 곧, 員外者의 組合利用權이 許用된 것이다.

나리시 漁業組合의 經濟的 機能은 朝鮮漁業令 時代의 開幕을 契機로 더욱 活潑해지게 되었으며, 1930年代에는 全漁業組合의 약 9割이 販賣事業을 實施하게 되었고, 資金의 貸付事業에 있어서는

16) 日本의 境遇에 있어서도 初創期(所謂 舊漁業法 時代)에는 漁業組合에 대한 經濟的 機能을 意圖적으로 排除하고 있었던 것이나 實際로 經濟事業을 행하는 組合의 數가 늘어나고 점차 그것을 擴充하는 傾向에 있었으므로 이를 후에 明治漁業法의 制定을 통하여 許用했던 것이다.

17) 이것은 1930年 4月 10日에 制定되었음.

〈表 10〉

朝鮮漁業令 時代의 漁業組合 共同施設의 種類

1. 組合員의 漁獲物 또는 製品의 委託販賣
2. 組合員의 漁業經營에 必要한 物品의 共同購入
3. 組合員의 漁業經營에 必要한 資金의 貸付
4. 貸付資金에 充當하기 위한 組合員으로부터의 預金
5. 組合員의 漁業에 關한 漕難의 救濟
6. 其他 組合員의 漁業經營에 必要한 施設

資料: 1930年 4月 10日 制定, 漁業組合規約, 第44條 참조.

114個組合이 實施하는 바가 되었다. 그러나 不振했던 것은 購買事業이었다.¹⁸⁾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漁業組合의 副次的인 經濟的 機能은 戰爭末期의 經濟統制政策의 實施와 解放以後 混亂期에 접어들면서 漁業組合의 物資配給機關化, 1950年代의 來서는 中央組織의 機能喪失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不振을 免하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日帝下 漁業組合이 經濟事業主體로서 機能發揮나 이를 積極的으로 推進해 나가지 못한 데는 非出資團體라고 하는 制度的 現實的 制約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3) 漁業組合의 行政補助機能

韓日合併을 기화로 韓國에 대한 本格的인 植民地統治가 實施됨에 따라 植民地政策의 一環으로 誕生된 漁業組合은 植民地政策의 遂行目的에 符合되는 各種施策을 遂行하고 여기에 必要한 政策的 機能을 強化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漁業權管理機能을 비롯한 日帝時代의 水産團體가 行한 모든 機能이 政策遂行의 代行機能의 性格을 갖는 것이었지만 그 中에서도 漁業組合에 賦課한 水産振興事業, 水産物 指定集荷機關으로서의 役割 등은 다른 機能과는 달리 明確히 末端行政機關이 이를 擔當해 나가야 할 性質의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漁業組合」의 機能을 「行政補助機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漁村指導事業機能

漁業組合은 日帝初期부터 共同施設事業을 통하여 漁村에 있어서 各種 共同施設을 擴大하고 增殖事業을 助成하는 등 오늘날 漁村指導事業에 해당하는 諸機能을 遂行해 왔던 것이다.

漁民들의 漁業改良, 生活改善, 文盲退治, 精神教育의 強化, 增殖技術의 普及 등을 活潑히 展開하기 시작한 것은 1932年 10月부터 所謂 昭和恐慌¹⁹⁾에 의해 疲弊해진 日本의 自國內의 農漁村經濟를 救出하기 위한 政策의 하나로 實施된 「農山漁村經濟更生運動」의 展開以後이다.²⁰⁾ 日本資本主義經濟를 一大危機의 局面에 處하게 한 昭和恐慌의 影響은 日本經濟의 隸屬的 體制에 있었던 植民地 朝鮮의 經濟에도 殊각 그 反應이 미치는 바가 되었으므로 韓國國內의 農漁村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措

18) 購買事業의 不振은 非出資制에 의한 組合의 資金不足이 가장 큰 原因이었다.

19) 1차 세계대전의 影響과 1929年의 世界經濟大恐慌의 影響이 日本資本主義經濟에 殊각 波及되어 日本國內의 主要 32個 銀行의 休業, 鈴木商店의 倒産, 企業의 換業短縮, 米價의 暴落, 심지어 昭和中期(1929年)를 기점으로 魚價도 暴落現象을 보임으로써 日本資本主義經濟가 未曾有의 一大危機에 直面해 있었던 現象을 昭和恐慌이라 한다.

20) 日本 水産廳, 水産業協同組合制度史(第一卷), p. 193.

置를 摸索하기 위하여 1930年代 中半부터 所謂「自力更生農漁村振興運動」이 登場되었다. 日帝는 이 運動의 10個年計劃을 發表하고 漁村의 更生과 그 振興에 對策을 講究함에 있어 漁業組合을 이의 推進 내지 指導督勵機關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特히 1928年 8月 1日자로 創設된「指定組合」²¹⁾制度에 의해 指定된 漁業組合에 대해서는「專任指導員」,「漁村指導員」혹은「漁村振興指導員」등으로 불리워지는 指導員을 두게 하고, 漁村婦人會, 漁村更生會 등의 官制 漁民組織 造成을 통하여 各種指導活動을 強化시켜 나갔다. 따라서 漁業組合의 이와 같은 指導事業機能은 漁業組合이 1930年代 中半부터 실시된 漁村更生運動의 推進主體가 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朝鮮漁業中央會가 調査한 1942年度의「朝鮮漁業組合要覽」을 통해 當時 指導事業을 比較的 活潑하게 展開하고 있었던 代表的인 組合들을 보면 京畿道の 龍游漁業組合, 開豐漁業組合, 慶南의 欲知漁業組合, 全北의 於靑島漁業組合, 江原道の 巨津漁業組合, 黃海道の 艾島漁業組合, 咸南의 北平漁業組合 등이다.²²⁾ 이러한 指導事業은 日帝末期에는 물론 더욱 擴充되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解放以後에는 行政制度의 混亂, 國家補助金의 微弱 등으로 오히려 萎縮되는 結果를 보였다.

② 指定集荷機能

解放直前에는 多數의 漁業組合들이 水産物集荷를 擔當하는「指定集荷機關」으로서의 役割도 遂行해 나갔다.

日支事變의 影響이 歐洲諸國으로 大대의인 波及을 미치게 되자 戰爭의 長期化를 豫想한 日本은 經濟體質을 統制的 國家權力中心體制로 하는 轉換을 보이면서 所謂「東亞新秩序의 建設」이라는 口號 아래 全體 國民經濟를 統制經濟로 몰고 갔다. 國家의 모든 行政力과 産業活動은 國家總力發揮을 위한 國防國家體制로 整備되면서 오직 勝戰이라는 至上課題 解決에 狂奔한 日帝는 戰爭末期에 이르러서는 各種 經濟統制政策을 더욱 強化시켜 나갔다. 따라서 自國內에서는 1939年 9月 18日에 物價統制令을 發表하고, 1940年 9月 6日에는 生鮮魚貝類出荷統制令施設助成規則을 公布하여 各種 物資의 配給制度의 強化와 더불어 水産物에 있어서도 自由流通을 極度로 制限시켜 나간 바 있었다.²³⁾ 그리하여 日本은 全漁業組合系統組織과 水産物流通關聯組織에 이르기까지 配給統制組織, 集荷機關, 買收販賣機關 등으로 그 役割을 指定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所謂 日本의「指定集荷制度」가 創設된 것이며,²⁴⁾ 같은 方法으로 韓國에 대해서도 統制經濟의 強化를 위해「物資統制令」을 公布하고 水産業에 있어서는 1943年 9月 30日 朝鮮總督府令 第303號로써「朝鮮鮮魚介配給統制規則」을 公布하여 各 單位組合을「指定集荷機關」으로, 聯合會 및 中央組織은 集荷機能과 同時に 統制機關으로 各各 朝鮮總督府의 指定을 받게 하였다.²⁵⁾ 이것은 中央組織의 統制下에서 各 産地에서 나는 水産物을 集荷

21) 「指定組合」이란 朝鮮漁業組合規則 第15條에 의하여 漁業組合 가운데 理事 및 副理事의 任免을 道知事가 행하고 給料水準까지 道知事가 定하는 朝鮮總督府의 指定을 받는 組合을 말한다.

이것은 日帝의 組合에 대한 官僚統制를 強化하기 위한 制度이며, 1934年 12月 29日부터는 水産組合에 대해서도 指定組合化措置를 取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日帝末期까지 全朝鮮의 重要組合은 모두 指定組合化됐던 것이다.

1934年 현재 指定組合數는 全國 192個 漁業組合中 77%인 148個 組合이었다(朝鮮總督府殖産局編, 帝國水産例規集, 1934, pp. 464~551).

22) 朝鮮漁業組合中央會, 朝鮮漁業組合要覽, 1942, 참조.

23) 日本 水産廳, 水産業協同組合制度史(第1卷), pp. 729~732.

24) 上掲書, p. 735.

日帝下 水産團體의 機能과 性格에 關한 研究

하고, 都賣市場으로 이를 集中시켜, 場外去來를 禁止시킨 것으로써 戰時 인플레이經濟에 便乘하여 일어나는 魚價暴騰現象을 抑制하고, 戰費調達을 위한 水産物輸出의 擴大와 軍給食의 解決 등을 위해 水産團體活動을 集中시키기 위한 制度的 措置였던 것이다.²⁵⁾

以上과 같이 1912년에 實施된 朝鮮總督府 漁業令에 의해 漁業權管理團體로 出現한 漁業組合이 現行 水協法이 公布·實施되기까지 半世紀 동안 漁村에 存立하면서 갖가지 物議를 惹起시키기도 하였으나, 反面에 各種의 事業實施를 擴大해 온 것도 事實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들 組合이 實施해 온 事業들을 앞의 考察을 綜合하여 크게 묶으면 다음과 같이 要約해 볼 수 있다.

- ① 漁業權管理主體로서의 機能
- ② 經濟的 機能
- ③ 政策遂行機關으로서의 行政補助機能

以上の 3類型으로 區分할 수 있는 機能 가운데서 그의 歷史的 展開過程을 통해서 볼 때 中樞의 基本機能은 漁業權의 享有管理機能이었으며, 附隨的 機能은 共同販賣, 共同購買, 資金貸付 등 經濟事業과 其他 共同施設 등이었다. 政策遂行機關으로서의 行政補助的 機能은 크게 指導事業機能과 水産物指定集荷機關으로서의 役割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朝鮮漁業令 時代に 와서 組合機能에 進展을 보임으로써 經濟的 機能의 重要性은 더욱 強調되었으며, 組合마다 크게 發展된 結果를 보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잠시 指摘한 바와 같이 日本에서는 1933년의 漁業法 改正을 통하여 官僚的 漁業組合이 出資制度를 導入함으로써 協同組合에로의 改組의 길을 연 漁業組合制度의 改編을 보였음에도 不拘하고,²⁷⁾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如前히 非出資制에 의한 前近代의 組合機能이 그대로 계속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組合이 漁村의 經濟的 機能團體로서의 發展은 遲延되어 왔을 뿐 아니라, 經營基盤을 確立하는데 있어서도 實質적으로 많은 制約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2. 水産組合의 機能

水産組合은 漁業組合과 같이 漁業令의 實施에 의해 全國적으로 設立되기 시작하였으나 初期에는 그의 設立과 活動이 不振하였다. 組織이 活潑했던 時期는 1930年代의 朝鮮漁業令에 이르러서이다. 漁業令時代に 設立된 것으로는 朝鮮水産組合을 表지로 海苔水産組合 등 모두 6個組合이었다.²⁸⁾ 그러나 이들은 1920年代 初期에 모두 消滅되고 그 중에서 慶南海藻生産組合 하나만이 1930年代로 넘어

25) 朝鮮魚介配給統制規則 (1943. 9. 30) 참조.

26) 組合以外の 者에게 水産物去來를 禁止시킨 「朝鮮鮮魚介配給統制規則」(1943. 9. 30) 第2條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漁業者, 鮮魚貝의 販賣, 其他 賣渡를 業으로 하는 者, 또는 이들의 團體가 朝鮮總督이 指定하는 곳에 鮮魚貝를 搬入할 때에는 朝鮮總督이 指定하는 者(以下 指定 集荷機關이라 稱한다) 以外の 者에게 그 搬入한 鮮魚貝의 賣渡 또는 賣渡의 委託을 할 수 없다.」

27) 日本은 1933년의 漁業法 改正을 통하여 從來의 非出資制에 의한 漁業權管理團體로서의 漁業組合이 出資制를 採用하고, 經濟的 機能의 積極性을 認定하며, 名稱을 漁業協同組合으로 改稱하는 등 一大改革이 이루어졌다(日本水産廳, 水産業協同組合法의 解説, 1974, p. 7).

28) 1912. 7. 조선수산조합
1914. 7. 진남목포해조수산조합
1917. 10. 경남해조수산조합
" 완도군해조수산조합
" 광양군해조수산조합
" 장흥군해조수산조합

오게 되었다. 初期에 있어서 水産組合의 活動은 水産業의 改良과 發達을 위한 試驗調査가 主이었으며, 餘他 經濟的 事業은 不振하였다. 물론 일찌기 全南地方에서 組織되어 있었던 3個의 海苔水産組合 등은 海苔製品의 改良과 統一 및 弊價의 昂揚을 圖謀하고 製品調査를 맡는 등의 指導的 機能外에 製品의 共同販賣도 實施하고 있었던 것이나 대체적으로 經濟事業은 不振을 免하지 못한 實情이었다. 그의 主된 理由로서는 水産組合에 대한 經濟的 機能이 初期에 있어서는 禁止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⁹⁾ 그러나 制度的으로 禁止되고 있는 經濟事業을 實際로 行하는 組合이 많으므로 朝鮮漁業令은 이의 實施를 認定하였던 것이며, 그리하여 1930年代初에 이르러서는 業種別 水産組合은 모두 17個에 達하게 되고, 동시에 組合의 各種事業도 그 活動이 매우 活潑하였다. 1932년에 밝혀진 17個의 水産組合 가운데는 製造工場을 保有한 곳이 5個組合, 委販事業을 實施하는 곳이 9個組合, 水産資金의 貸付事業을 實施하는 곳이 10個組合에 達하고 있었으며, 그後 水産組合의 이와 같은 事業은 더욱 繁唱해 나갔다.

따라서 水産組合의 機能을 그의 組織普及이 活發했던 時期를 中心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水産組合의 設立目的을 보면 朝鮮漁業令 第54條 第2項에서 「當該水産業의 改良·發達을 圖謀하고 營業上의 弊害를 矯正함에 있다」로 規定하였으며, 同條 第3項에서는 「水産組合은 營利事業을 行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곧, 水産組合은 同業者組合의 性格을 가지는 것이 되고, 그 目的은 漁業의 改良·發達과 그들의 漁業上에서 惹起되는 各種의 紛爭과 그 弊害의 解決을 위한 公法人的 機能發揮에 主眼이 두어졌다. 그리하여 當時의 水産組合들은 實際로 該當 漁業分野를 위하여 漁場調査, 漁具 漁法의 試驗研究 등에 注力하여 漁業의 改善·發達에 크게 寄與하는 바가 되었으며, 또한 日本人 漁夫와 韓人 漁夫間의 마찰, 操業地域問題, 相互過多競爭에 의한 被害의 事前調整 등의 問題를 위해 主管해나가거나 仲裁的 役割을 主로 擔當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潛水器水産組合의 漁法改發 및 操業體數의 自體調整, 第2區機船底引網漁業水産組合의 船員養成과 咸南 및 江原의 兩道 漁民들의 操業區域紛爭調整 등은 그의 代表的인 예이다.³⁰⁾ 그러나 水産組合이 初期에 制限을 받아왔던 事業團體로서의 機能인 資金貸付, 共同購買, 加工品의 委託販賣 등의 事業實施는 1929年の 朝鮮漁業令과 水産組合規則의 改正을 통해 許容됨으로써 經濟事業에 置重하는 組合들이 늘어나는 現象을 보였다.³¹⁾

1932年과 1942年 및 1947年度에 있어서 水産組合이 展開한 事業들을 다음 <表 14>를 통해서 보면 製造事業, 委託販賣事業 및 金融事業을 大의으로 實施하였다. 1942年度의 경우 全體 24個組合 가운데서 製造事業은 10個 組合이, 委販事業은 13個 組合이, 金融事業은 17個 組合이, 그리고 共同購買事業은 全組合이 實施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1930年 10월에 組合員 43名을 가지고 設立되어 解放以後까지 있었던 朝鮮第2區機船底引網漁業水産組合의 規約이 定하고 있는 同組合의 目的과 事業種類를 다시 보면, 第1條에 「本組合

29) 1912年 2月 23일에 制定된 水産組合規則 第3條에는 「組合은 營利事業을 함을 得지 不得함」으로 規定하고 있다.

30) 水産總, 韓國水産史, pp. 412~17 참조.

31) 張設鎬, 漁村契에 관한 研究, 太和出版社, 1980, p. 32.

은 機船底引網漁業의 開發을 圖謀하고 營業上의 弊害를 矯正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하고, 第32條를 通해서는 事業의 種類를 다음과 같이 列擧하고 있다.

- ① 組合員의 漁業에 關한 紛議의 調整
- ② 漁場調査 및 漁船·漁具·漁法의 改善에 關한 施設
- ③ 組合員의 漁業에 必要한 資金의 貸付
- ④ 組合員의 漁業에 必要한 物品의 共同購入
- ⑤ 組合員의 漁業에 關한 遭難의 救濟
- ⑥ 其他 機船底引網漁業의 改善發達과 營業上의 弊害矯正에 必要한 施設

以上の 考察을 綜合할 때 水産組合은 첫째, 當該漁業의 發達을 目的으로 하는 漁場調査, 漁具·漁法의 改良 등을 위한 調査研究活動을 행하는 「特定水産業에 關한 助長機關」³²⁾으로서의 機能과, 둘째 組合員을 保護하기 위한 團體行動, 相互利益을 위한 紛爭의 調整活動 등을 행하는 指導事業을 實施하고 있었으며, 세계 經濟의 機能을 發揮하고 이를 擴充시켜 온 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은 漁業組合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水産組合의 經濟的 機能은 委託販賣, 共同購買, 資金의 借入 및 貸付의 3種事業이 中心이 되고 있었다.

水産組合과 漁業組合과의 機能上의 本質的인 差異는 漁業組合은 漁村의 發達 그 維持를 위한 漁場管理機能이 中樞的인 機能인데 대하여, 水産組合은 特定漁業의 開發에 目標을 둔 同業者的 事業團體라는 점이라 하겠다. 水産組合에 대한 漁場管理 機能排除의 意圖는 첫째, 漁民 아닌 特定 利害者 集團에 의한 漁場의 獨占的 支配를 防止하고자 한 데 있다. 漁業組合의 組合員은 原則적으로 「地區內에 居住하는 漁業者」일 것이 基本的 資格要件이 되지만 水産組合에 있어서는 「地區內에 居住하는 者」로서도 可能하기 때문에,³³⁾ 여기에 漁場支配權이 주어졌을 경우 非漁民에 의한 漁場支配, 漁業權의 漁村不在地主化를 發生시킬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漁村의 共同體의 固定化를 통한 官僚的 支配 및 그 收奪의 容易性을 貫徹하기 위해서이다. 漁場의 集團的 地主化 내지 團體的 支配는 相對적으로 組合의 經濟的 機能의 充實化를 弱화시키게 되고 漁村分解의 抑制내지 共同體解體의 阻止의 機能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³⁴⁾ 세계, 漁場管理機能은 漁業組合이 專擅하되 有望漁業의 開發과 高級魚 내지 輸出戰略魚種生産을 增大시킴으로써 食品需給의 安定과 水産物의 輸出擴大를 꾀하는 일은 水産組合으로 하여금 그 主體的 推進機能을 擔當하게 하는 團體機能 專門化를 꾀했던 점도 看做할 수 없는 것이다.³⁵⁾

3. 漁業組合聯合會의 機能

1) 組合聯合會組織의 意義

32) 上掲書, p. 31.

33) 朝鮮漁業令 第45條 및 第53條 참조.

34) 日本 水産總, 水産業協同組合制度史(第1卷), p. 143.

35) 舊漁業法에 의한 日本의 水産組合이 物産同業組合, 輸出品同業組合法을 繼承하였다는 점에서 朝鮮의 水産組合도 같은 法趣旨의 영향권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漁民加工業者 및 漁商人을 組合員으로 하는 經濟團體로서 出發하였다.

수 산 경 영 론 집

1912년의 漁業令 施行에 의해 設立되기 시작한 漁業組合은 그後 時代가 變遷하는 동안에 組織이 沿岸到處에 普及되고 組織網도 全國의으로 擴大되어 나갔으며, 同時에 機能面에 있어서도 顯저한 進展을 보였으나 그의 機能領域이 經濟的 事情 또는 地域的 條件으로 말미암아 一定한 範圍에서 局限되어야만 하는 單位組合으로서의 限界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漁業의 發達과 漁村 經濟의 向上에 隨伴하여 增大되는 漁民의 資金需要 등 經濟的 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單位組合 規模로서는 이것이 不可能하였던 것이므로 組合은 相互間의 連絡을 圖謀하고 共同施設事業의 擴充과 그 發展을 促進시키기 위한 道單位的 漁業組合을 統合한 聯合會組織을 必要로 하였던 것이다. 各 漁業組合聯合會에 經濟的 事業을 支援·助長하며, 所屬組合의 機能을 補完·擴大하고 業務上의 指導와 그 統制를 擔當한 聯合體組織의 創設은 이러한 理由에서 실현되었다.³⁶⁾

그리하여 1929년의 漁業制度改革을 통해 漁業組合聯合會에 관한 規定을 朝鮮漁業令과 朝鮮漁業組合規則에 反映토록 하고 그 設立을 권장함으로써 비로소, 1930年 11월에 最初의 聯合會가 誕生하게 되었다.³⁷⁾

2) 漁業組合聯合會의 機能

漁業組合의 普及과 그 機能이 擴大됨에 따라 政府의 積極的인 勸獎에 의해 設立이 促進된 漁業組合聯合會는 朝鮮漁業令 第50條의 規定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漁業組合聯合會는 所屬組合의 目的을 達成시키기 위하여 必要한 施設을 하거나 所屬組合에 대한 業務上의 指導를 함을 目的으로 한다」는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1929年 12月 10日 總令 第115號로 公布된 朝鮮漁業組合業務規定 第65條를 通해서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다.

- ① 所屬組合이 必要로 하는 資金의 貸付
- ② 所屬組合에 대한 預金의 吸收
- ③ 所屬組合에 대한 業務上의 指導
- ④ 所屬組合이 委託하는 漁獲物 및 그 製品의 販賣
- ⑤ 앞서 提示한 것 以外에 所屬組合의 目的達成을 위해 必要한 施設 등이다. 이것은 곧 同規程 第10條에서 列擧하고 있는 漁業組合의 共同施設 및 그 內容과 別로 差異가 없다.

36) 水協中央會, 水協調查月報, 1980. 9, p. 5.

初最의 漁業組合 聯合會는 慶尙北道 漁業組合聯合會이며, 解放後에 設立된 것으로는 濟州道 漁聯과 全南 漁聯으로서 이것이 最終 設立된 漁聯이다.

37) 1929년에 制定된 朝鮮漁業令이 施行된 直後인 1930年 6月 各道의 內務·産業 兩部長會議에서 행한 朝鮮總督의 漁業組合聯合會 設立을 促求한 指示內容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近時 漁業의 發達과 漁業經濟의 進展으로 因하여 漁業資金의 融通, 漁業用 物資의 購入, 漁獲物 및 그 製品 運搬과 販賣, 通信連絡, 遭難救恤 등은 漁業組合 各個의 施設로서는 完全히 그 目的達成이 難하게 되었으므로 漁業組合聯合會를 設立하여 共同의 힘에 의한 그 施設의 擴大充實을 圖謀하지 않을 수 없는 必要性이 切迫하므로 此際에 可及的 迅速히 이를 設立할 것을 勸獎하는 同時에 將來 이것이 堅實한 發達을 遂行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方針에 依據 取扱할 것」

① 相當數의 漁業組合을 가지는 道에 있어서는 可及的 速히 聯合會의 設立을 勸獎하고 同時에 適當한 方法에 의하여 그 事業의 達成에 努力할 것.

② 漁業組合聯合會의 設立은 1道 1聯合會로 하고 同時에 所屬組合으로서는 道內 全組合을 網羅할 것 (朝鮮水產例規集, 1930. 5, 「漁業組合聯合會의 設立方針에 關한 件」, p. 578).

日帝下 水産團體의 機能과 性格에 關한 研究

따라서 漁業組合을 構成員으로 하는 漁業組合聯合會는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共同 施設事業을 통한 經濟的 活動과 所屬組合의 發達을 위한 事業의 運營 및 業務上의 矯正 내지 그 指導를 擔當하는 二大機能을 갖는 漁業組合의 系統組織임을 알 수 있다. 經濟, 指導의 兩機能은 다같이 聯合會의 目的機能이었으나 이 中에서 聯合會의 中樞的인 機能은 經濟的 機能이었으며, 여기에는 金融事業, 委託販賣事業 및 共同購入의 3種 經濟事業이 中心이 되고 있었다.

이들의 事業實積과 그 推移를 解放以後까지 南韓에 存立하고 있던 聯合會를 中心으로 하여 살펴 보면 다음의 <表 11.12>와 같다.

<表 11> 漁業組合聯合會의 事業推移 및 事業의 構成

	事 業 推 移(千圓)				事 業 構 成(%)			
	1938	1939	1940	1947	1938	1939	1940	1947
貸付事業	2,638	2,648	3,872	221,297	12.4	10.2	11.2	11.8
委託販賣事業	18,277	23,129	27,804	1,190,837	85.9	86.2	80.2	63.2
購買事業	341	1,063	2,979	471,304	1.7	3.6	8.6	25.0
計	21,256	26,841	34,655	1,883,438	100.0	100.0	100.0	100.0

資料：韓國水産業會, 水産月報, 第2號, 1949. 1.

<表 12> 漁業組合聯合會의 年度別 事業推移 (單位：圓)

事業別 漁聯名	貸 付 事 業			委 販 事 業			購 賣 事 業		
	1933	1939	1940	1938	1939	1940	1938	1939	1940
慶南	793,000	738,000	749,000	未詳	未詳	未詳	107,000	370,000	1,451,000
全南	704,359	703,076	988,231	6,774,568	14,933,864	17,666,100	未詳		
全北	99,900	112,000	168,000	1,562,167	2,026,016	2,860,113	99,940	204,180	426,478
忠南	—	—	244,820	—	—	336,044	—	—	164,305
黃海	—	—	320,384	968,182	2,630,926	3,057,878	未詳	224,551	546,845
江原	768,932	869,521	1,094,085	184,292	429,597	592,084	未詳		
京畿	272,000	226,000	307,500	8,788,000	3,109,020	3,292,000	134,420	264,660	390,389
慶北	未詳			未詳			未詳		
計	2,638,191	2,648,597	3,872,020	18,277,209	23,129,406	27,804,219	341,360	1,637,571	2,979,017

資料：上同

表中에서 보면 經濟事業은 每年 擴充되어 나갔으며, 그 中 가장 比重이 큰 事業은 委託販賣事業이었다. 組合側에서 본 聯合會의 重要事業은 金融事業과 共同購買事業은 不振했던 것이다.

金融事業은 日本大藏省預金部로부터 支援되는 低利資金과 朝鮮殖産銀行, 金融組合聯合會 등으로 부터 調達하는 借入金 및 自體造成資金 등을 財源으로 한 資金을 所屬組合에 直貸 혹은 轉貸하는

〈表 13〉

1947年度 漁業組合 聯合會의 經濟事業 構成

(單位:千圓)

	委販高	共同購入	貸付金	計	構成比(%)	備 考
黃海道 漁聯	1,626	30,504	18,230	50,360	2.7	} 61.6%
京畿道 "	174,154	34,872	11,168	220,194	11.7	
忠 南 "	8,638	29,612	20,424	58,674	3.1	
全 北 "	—	30,426	14,819	45,245	2.4	
全 南 "	703,739	102,327	47,427	853,493	45.3	
慶 南 "	160,983	83,097	62,809	306,889	16.3	
慶 北 "	135,175	120,722	28,020	283,917	15.1	
江 原 "	400	23,330	17,250	40,980	2.2	
濟 州 "	6,122	12,414	1,150	19,686	1.2	
計	1,190,837	471,304	221,297	1,883,438	100.0	
構成比(%)	63.2	25.0	11.8	100.0		

資料:上同

것이였다. 漁業組合聯合會가 取扱한 貸付資金의 種類는 漁業資金, 製造資金, 委販資金, 漁船建造資金, 共同購入資金, 共同施設資金 및 副業資金 등이다.

各道の 漁業組合聯合會는 漁業組合과 같이 戰爭末期에는 指定集荷機關의 役割과 그의 地方統制業務도 擔當하였다. 朝鮮魚介配給統制規則에 規定하고 있는 漁業組合聯合會의 指定集荷機關으로서의 任務는 集荷機關(漁業組合)이 行하는 出荷의 統制와 여기에 必要한 指示를 發하는 業務였다.³⁸⁾

4. 水産組合聯合會의 機能

(1) 朝鮮鱒油肥製造業水産組合聯合會의 例

朝鮮漁業令 第55條와 第56條를 보면 水産組合은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 水産組合聯合會를 設立할 수 있고, 設立되는 同聯合會는 法人으로 하며, 所屬水産組合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施設 및 所屬水産組合에 대한 業務上的 指導를 目的으로 한다고 明示되어 있다. 그리고 同規則 第57條에 水産組合聯合會는 營利事業을 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³⁹⁾

여기서 보면 水産組合聯合會는 所屬水産組合의 利用에 充當하기 위한 共同施設事業과 其他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을 隊行할 수 있는 ① 經濟的 機能과 所屬組合活動을 指導하고 統制하며, ② 指導機能을 隊行하는 團體로 規定된다. 이러한 兩機能의 保有는 漁業組合聯合會의 機能과 다를 바 없다.

水産組合은 1912年 漁業令의 實施로 制度的인 設立이 認定되었으나 처음에는 組合設立이 不振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1932년에 17個, 1941년에는 24個로 組織이 擴大되면서 聯合會組織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要請에 의해 水産團體史上 唯一한 水産組合聯合會로 誕生된 것이 朝鮮

38) 朝鮮魚介配給統制規則 참조.

39) 朝鮮水産組合規則 참조.

日帝下 水産團體의 機能과 性格에 關한 研究

鱒油肥製造業水産組合聯合會이다. 上記 聯合會는 우리 나라에서 정어리漁業이 全盛期를 謳歌하던 1930年代 中半에 設立된 것으로, 40) 當時 정어리漁業을 基盤으로 製造業水産組合을 組織하고 있었던 咸鏡北道鱒油肥製造業水産組合(1930年 9月 設立)과 咸鏡南道鱒油肥製造業水産組合(1930年 12月 設立) 및 江原道 鱒油肥製造業水産組合(1930年 12月 設立)의 3個 製造業水産組合이 그의 會員이 된 것이다. 41) 정어리漁業의 發達에 步調를 맞추어 所屬 3個組合에 대한 資金貸付, 정어리魚油 및 魚骨의 委託販賣, 정어리魚油 및 搾粕을 위한 製造施設 등의 施設事業을 共同으로 展開해 나가기 위하여 設立된 當時의 3個 鱒油肥製造業水産組合의 聯合會는 全體 水産組合에서 占하는 比重이 대단히 컸다. 예로서 1941年의 경우 全體 24個水産組合中 組合員數의 面에서는 약 70%, 漁獲高의 面에서는 36%, 製造高 面에서는 87.6%, 委販高는 77.4%를 占함으로써 다른 21個 水産組合의 全體勢力을 凌駕하는 程度였으며, 이와 같은 比重으로 말미암아 全國 水産組合의 貸付金中 65%가 정어리鱒油肥製造業水産組合에 支援되고 있었던 것이다(<表 14> 참조).

그러나 朝鮮鱒油肥製造業水産組合聯合會는 以上과 같은 莫強한 位置에 있었던 油肥製造業團體의 發展을 助長하고 그 活動과 業務를 指導統御하는 役割을 擔當해 나가고 있으나 1940年代 初半 정어리漁業이 急進적으로 衰退하게 되자 그의 存在基盤을 잃게 되어 인근 漁業組合聯合會에 機能一部를 移管함과 同時에 解體되고 말았다.

<表 14> 정어리 鱒油肥製造業水産組合과 其他 水産組合과의 事業對比(1942) (單位:名, 圓)

	組合員數	漁獲高	製造高	委販高	貸付金	共同購買
咸南鱒油肥水組	368	8,773,016	9,679,325	7,356,654	10,855,174	291,420
咸北鱒油肥水組	571	9,679,325	32,034,993	32,034,992	499,325	268,926
江原鱒油肥水組	882	--	11,342,131	15,729,919	801,411	1,732,868
小計 ㉔	1,821	18,452,341	53,056,449	55,121,565	12,155,910	2,793,214
其他水産組合*	901	32,797,886	7,507,375	16,123,069	6,546,428	18,022,225
合計 ㉕	2,722	51,250,227	6,053,824	71,244,634	18,702,338	20,815,439
㉕/㉔ (%)	66.9	36.0	87.6	77.4	65.0	13.4

*) 其他水産組合 數는 21個임.

資料: 朝鮮總督府, 朝鮮의 水産 (1942), 1943, p. 85.

(2) 水産組合聯合會組織의 不振要因

水産組合은 普反이 가장 活發하였던 1930年代末에 있어서 그 數는 무려 24個組合에 達했던 것이다. 그러나 水産組合이 水協制度의 成立으로 解體되기까지 聯合會의 設立을 보인 곳은 앞서의 정어리鱒油肥製造業分野 밖에 없었으며, 그것도 단 1個의 聯合會가 設立되었다가 곧 解散하고 말았다. 앞에서 든 朝鮮鱒油肥製造業水産組合聯合會가 바로 그것이다.

40) 정확하게는 1936年 5月 1日임.

41) 이 3個 鱒油肥製造業水産組合 以外에도 慶尙北道鱒油肥製造業水産組合(1930年 10月 設立), 慶尙南道 鱒油肥製造業水産組合(1931年 1月 設立)이 있었으나 聯合會 創立以前에 둘 다 解散되고 말았다.

수 산 경 영 본 질

水産組合은 業種과 規模, 漁業方式 등을 各各 丹리하는 漁業者 혹은 이에 關聯있는 者들에 의해 設立된 組織이기 때문에 그 種類와 形態는 매우 多樣한 特徵을 지니고 있었다. 1940년에 이르러 일 단 設立이 끝난 이러한 水産組合은 構成員이 다르고 資本主義的 活動能力을 어느 정도 具備한 者들의 團體였던 것이므로 그들 各者의 利害에 따라 別途의 組織을 分立的으로 運營하고 있었다. 따라서 組合員의 從事業態面을 基準해서 이들 水産組合들을 分類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4形態로 大別해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따라 組合들을 分類해 본 것이 다음의 <表 15>이다.

<表 15> 形態別 水産組合 分類*)

第①의 形態: 漁業者에 의해 組織된 水産組合	慶南定置網漁業水産組合, 朝鮮第1, 2, 3, 4 및 5區機船底引網漁業水産組合, 朝鮮第1, 2, 3 및 4區潛水器漁業水産組合, 領海灣定置漁業水産組合, 朝鮮鯖巾着網漁業水産組合, 東海鮐巾着網漁業水産組合, 咸鏡北道機船巾着網漁業水産組合, 咸鏡北道定置漁業水産組合, 鳴綠江白魚水産組合 (以上 16個)
第②의 形態: 製造業者에 의해 組織된 水産組合	朝鮮寒天製造業水産組合, 朝鮮鱈詰業水産組合, 咸鏡北道鱈油肥製造業水産組合, 咸鏡南道鱈油肥製造業水産組合, 江原道鱈油肥製造業水産組合 (以上 5個),
第③의 形態:**) 生産者와 販賣業者에 의해 組織된 水産組合	咸鏡北道輸出鹽魚水産組合, 咸鏡南道輸出鹽魚水産組合 (以上 2個)
第④의 形態:***) 販賣業者에 의해 組織된 水産組合	慶南海藻水産組合 (以上 1個)

*) 形態區分은 前述한 4形態의 分類基準을 뜻하며, 組合數는 1941年 現在의 水産組合數를 基準함.
 **) 정어리와 청어의 生産者와 그 鹽製品의 製造 및 販賣業者에 의해 組織되는 것으로 漁法改善, 加工法改良 違反防止, 販路開拓 및 그 合理化에 必要한 事業을 實施하는 組合이다.
 ***) 漁業令 時代 初期에 設立되어 解放直前까지 存續해 오다가 1944년에 解散되었으며, 海苔販賣業中心의 團體이다.

· 以上과 같은 水産組合形態들이 끝내 아무런 聯合體도 形成하지 못한 要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點을 들어 그 理由를 말할 수 있다.

첫째는 組合政策에 의한 影響을 들 수 있다. 朝鮮漁業令의 實施에 즈음하여 當時 日帝는 「漁業組合設立의 方針에 關한 件」, 「水産組合設立의 方針에 關한 件」 등으로 水産團體設立을 勸獎하는 要旨의 內容을 內務·産業 兩部長 連席會議를 통해 指示하고, 이를 政策의으로 獎勵해 나갔다. 1930年代以後의 組合增設은 여기에 起因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漁業組合과 그 聯合會의 普及에 대해서는 國庫補助金規則의 制定, 漁場免許制度의 改正, 漁業組合聯合會에 대한 設立의 強制化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의 設立 政策⁴²⁾을 펴나갔다. 그러나 水産組合과 그 聯合會에 대해서는 相對的으로 그의 普及政策이 微弱했던 것이다. 團體政策의 이러한 差別性은 當時의 植民地水産政策이 水産業의 歷史的 底邊構造를 이루고 있었던 零細漁民의 保護와 漁村의 維持經營을 통한 恒久的 支配의 方向

42) 漁業組合 및 同聯合會 普及의 獎勵政策은 主로 1930年代에 強化되었으며, 이러한 政策은 國庫補助, 行政指示 등을 통해 積極性을 띠었을 뿐 아니라 強制性도 同伴한 事例들이 많다.

에서 推進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大部分의 水産組合은 資本主義的 漁業者에 의한 團體일 뿐 아니라 그 範圍가 全國的이므로 이미 그들의 組織의 活動만으로도 카르텔的 獨占行爲가 어느 정도 可能하였으나, 그러나 獨占的 組織으로서는 環境對應力을 發揮하기 困難한 非資本主義的 零細漁民에 의한 組織과 一定地域範圍를 넘어설 수 없는 地區單位組合은 이 점에서 항상 不利性을 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水産組合과는 本質的으로 差異가 있는 漁業組合에 대하여는 그들 單位組織의 聯合行爲를 政策的으로 助長하는 대신, 水産組合에 대해서는 오히려 政策的으로 이를 制限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1930年代에 정어리 漁業이 繁盛을 이루게 되자 生産의 急増과 여기에 世界大經濟恐慌의 余波까지 加勢하여 정어리 油肥價格이 暴落하는 事態를 가져오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東海岸經濟의 大部分을 占하는 정어리 漁業者 및 그 製造加工業者들은 極甚한 經營難에 逢着하게 되자 油肥製造水産組合과 同聯合會의 組織이 탄생하게 된것은 當時의 朝鮮總督府가 이에 대한 打開策을 講究하지 않을 수 없었던 對外的인 영향이 워낙 컸던 때문이다.⁴³⁾

세째는 客觀的 條件과 構成員의 質的 問題이다. 協同組合 뿐만 아니라 그의 類以團體에 있어서도 그의 組織과 發展에는 반드시 一定한 存立條件이 되는 客觀的 背景과 構成員의 等質性을 必要로 한다. 이와 같은 條件이 成就되지 못하면 組合 혹은 그 聯合體의 成立과 發展은 當然히 지연되고 마는 것이다. 當時의 鱈油肥水産組合은 環境惡化와 數個의 同質的 組合이 인접지역에서 相互 密接한 關係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問題의 解決을 위한 共同戰線을 介함에 있어서 他水産組合에 比해서 比較的 容易했다. 그러나 다른 水産組合에 있어서는 이러한 條件이 具備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共同運命的인 問題의 勘刻性에 봉착되어 있지도 않았다. 要컨대 聯合會組織의 必要性을 크게 느낄 정도의 興件造成이 없었던 것이다.

네째는 水産組合의 個別的 分立主義와 相互對立으로 말미암은 共通目標의 缺如이다. <表 15>에 의하면 1940年代初에 漁業者만으로 組織된 水産組合數만 하여도 무려 16個로서 全體의 6割을 넘고 있었지만 이것을 再分類하게 되면 底引網漁業水産組合, 潛水器漁業水産組合 및 定置漁業水産組合의 3形態로 다시 細分할 수 있게 된다. 이들 各形態의 組合은 各已 多樣한 漁具漁法과 漁場 및 市場을 共有하게 되고, 또한 그 内部에 있어서도 組合間 및 漁業者間에 相互利害의 對立現象이 뚜렷했던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組合 모두가 共感할 수 있는 兩立可能한 共通目標의 整立이란 대단히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協同組合聯合會의 自主的 誕生은 쉽게 期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5. 中央組織의 機能과 形態의 變化

解放以後에 있어서 水産團體는 機能과 形態面에서 그 以前과 비교하여 별다른 變化가 없었다. 그러나 中央組織에 있어서는 이와는 달리 機能面에서, 그리고 形態的인 側面에서 많은 變化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43) 1930年 7月 朝鮮總督府는 「油肥價格暴落對策協議會」를 主管하고 關係道로 하여금 製造業者들이 組合을 急設하여 販賣改善策을 講究하게 함으로써 當時 東海岸 3道에는 關係水産組合의 設立을 促求하게 되었으며, 同聯合會도 이러한 施策이 奏効한 結果였던 것이다.

解放後에 있었던 水産團體中央組織으로서는 朝鮮水産業會, 韓國水産業會 및 大韓水産中央會의 3機關이었으나 이들 中央組織은 3形態가 系統을 달리하면서 共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時代의 變遷과 機能의 變化에 따라 같은 組織이 解散과 名稱의 變更 등을 통해 契機的으로 改編 設立되어 온 變化를 보인 點이다. 그러므로 主流는 언제나 하나였다는 점에 留意해야 한다.

즉 解放以前부터 있었던 唯一의 中央組織으로서는 朝鮮水産業會였으며, 이것은 그후에 名稱만 바꾸어 韓國水産業會로 되었고, 다시 韓國水産業會는 大韓水産中央會로 改編되었다가 後에 新設되는 水協中央會의 母體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解放以後에 있어서 水産團體 中央組織은 朝鮮水産業會 → 韓國水産業會 → 大韓水産中央會 → 水協中央會에로의 變遷過程을 통해서 그 모습을 變貌시켜 왔다.

朝鮮水産業會는 1944年 日帝의 敗亡直前に 實施된 水産團體統合作業의 結果로 同年 4月 1日에 創設된 水産團體의 中央組織이다. 이것이 設立됨으로써 以前까지 存續되어 오고 있었던 朝鮮漁業組合 中央會와 朝鮮水産會 그리고 朝鮮水産聯盟⁴⁴⁾ 등의 中央組織制度는 廢止되고 말았으며, 그 대신에 朝鮮水産業會라는 單一 中央組織이 서고, 解散된 上記 諸 中央組織의 機能一切를 委讓받아 統制力을 強化시켰던 것이다.⁴⁵⁾ 當時의 水産團體中央組織의 形態別 組織基盤과 機能 및 그의 運營機構를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表 16>과 같다. 그리고 이들 組織의 統합으로 整備된 朝鮮水産業會의 組織基盤 및 그 機能은 <表 17>와 같다. 곧 <表 17>를 分析해 보면 朝鮮水産業會는 모두 11個項目에 達하는 多樣한 事業遂行團體인 것이다. 이 가운데 ①, ④, ⑤, ⑨의 4個項目은 朝鮮水産聯盟의 實施機能이었으며, ②, ③, ⑧의 3個項目은 朝鮮水産會로부터 委讓되었고, ⑥, ⑦, ⑩의 3個項目은 朝鮮漁業組合 中央會의 事業이었다. 이들 3形態의 中央組織의 機能을 朝鮮水産業會가 全部 擔當하게 된 것이다.⁴⁶⁾ 朝鮮水産業會가 이와 같은 방대한 事業을 원활히 執行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上記 3個의 中央團體가 保有하고 있던 權限까지도 抱括的 體系의 으로 引繼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⁴⁷⁾

이와 같이 解放直前に 統制政治의 產物로 登場한 朝鮮水産業會는 全國水産團體의 名실상부한 中央統制體로서, 그리고 完全한 國策的 團體로 變貌되고 말았다.⁴⁸⁾ 그러나 1945年 8月 15日의 祖國光復을 맞이하게 되자 그 名稱과 機能에 아무런 變更없이 그대로 繼承해 온 朝鮮水産業會는 1948年의 大韓民國政府樹立을 契機로 드디어 1949年 1月 30日에 그 名稱을 韓國水産業會로 改稱하였던 것이다. 朝鮮水産業會의 強力한 中央統制力은 解放直後 混亂期를 克服하는데 中樞的인 役割을 擔當함으로써 有效하게 活用되기도 하였다.

즉 解放後 政府樹立까지 3年間의 美軍改下에서 朝鮮水産業會는 1945年 10月 20日 美軍政 一般告示

44) 朝鮮水産聯盟은 下部組織으로서 道, 郡의 聯盟을 두고 있으며, ① 水産業의 計劃生産 ② 計劃配給 ③ 漁村指導機能 등을 遂行해 나갔다. 그러나 1940년에 創設되어 1944년까지 存在해 오다가 朝鮮水産業會의 設立으로 解散되고 말았다.

45) 1944年의 水産團體 統合經緯에 대해서는 1944年 1月 12日 釜山日報의 「水産三團體統合」이라는 題下의 記事를 參考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46) 水産團體統合 實施要綱(1944. 2. 18) 참조.

47) 朝鮮水産業會 機構概要(1944. 2) 참조.

48) 水産團體 統合實施要綱에서 統合趣旨을 다음과 같이 分明히 밝히고 있다.

「水産團體의 綜合性, 統一性을 企圖하고 또한 統制力을 強化함으로써 官廳의 施策에 適應하여 迅速的 確하게 이물 그 職域에서 具現시키기 위하여 簡素하고도 強力한 統制機構의 結成을 主眼으로 左와 같이 조치하기로 한다.」

日帝下 水産團體의 機能과 性格에 關한 研究

<表 16>

水産團體統合當時(1944年)의 中央組織의 機能 및 運營制度

區 分	朝鮮漁業組合中央會	朝鮮水産會	朝鮮水産聯盟
1. 設立年度	1937. 5. 19	1923. 4. 1	1941. 3
2. 設立根據	朝鮮漁業會 및 朝鮮漁業組合中央會 定款	朝鮮水産會令(1926. 1. 25 公布)	國民總力水産報國運動指導要綱(1941. 3 制定)
3. 組 織	漁業組合과 同聯合會, 個人會	道水産會	道水産聯盟
4. 機 能	1) 漁業組合에 關한 調查研究 2) 漁業組合趣行의 宣傳 3) 會報·圖書發刊 4) 漁業組合에 對한 功勞者 表彰 5) 漁業組合에 對한 教育 講演 6) 漁業組合 系統組織의 任職員에 對한 給與共濟事業 7) 漁業組合系統組織의 施設物에 對한 損害補填事業 8) 漁業組合系統組織을 위한 販賣斡旋 9) 漁業組合系統組織을 위한 所 要物品의 共同購入 10) 위 以外에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朝鮮漁業組合中央會 定款 第4條)	1) 水産業의 改良發達을 위한 事業 2) 水産業에 關한 行政當局에 對한 建議 3) 行政當局의 水産業에 關한 諮問 4) 水産業에 關한 報告書提出 5) 水産業에 關한 調査 (朝鮮水産會令 第1條에 의한 日本水産會法 第1, 5, 6條 規定)	1) 水産業의 計劃生産 指導 2) 水産業의 計劃配給 指導 3) 漁家指導 4) 漁村振興指導 (國民總力水産報國運動指導要綱)
5. 運營方式	1) 執行機構 會長: 1人(評議員에서 選任) 理事: 3人以内(評議員에서 選任, 任期: 3年) 參事: 若干人 書記: 若干人 2) 監事機構 監事: 3人以内(評議員會에서 選任) 資格: 正會員의 役員 (任期: 2年) 3) 議決機構 評議員會 — 會長 — 評議員 評議員 — 漁聯理事長(當然職) — 會長이 任命한 各道 漁業組合 代表 (任期: 2年) 通常總會: 年1回 臨時總會	1) 執行機構 會長 副會長: 1~2人 2) 監事機構 評議員 — 議員 — 特別議員 3) 評議員職能 會長諮問 會務執行 財産監事 4) 議決機構 總會 — 評議員 — 特別議員 總代會: 上同 委員會: 會長, 副會長 기타 會則에 의거 選任된 者	1) 執行機構 國民總力運動指導委員會 水産聯盟指導委員會

資料: 朝鮮漁業組合中央會 定款, 朝鮮水産會令, 日本水産會法, 國民總力水産報國運動 指導要綱等 참조.

<表 17>

朝鮮水産業會의 組織 및 機能

1. 組 織	漁業組合, 同聯合會, 水産組合을 會員으로 함
2. 業務區域	朝鮮一圓
3. 事 業	① 水産業의 指導獎勵 ② 水産業의 發達에 관한 施設 ③ 水産業에 관한 調査 研究 ④ 水産物生産의 確保強化를 위한 施設 ⑤ 水産業의 統制에 관한 施設 ⑥ 水産物의 委託販賣, 販賣의 斡旋 ⑦ 水産用 혹은 會員이 必要로 하는 物資의 共同購入, 購入斡旋 ⑧ 水産業者의 養成 ⑨ 漁村指導에 관한 施設 ⑩ 會員 및 會員의 業務에 관한 指導 ⑪ 其他 目的達成上 必要한 施設
4. 機 構	代表機關 實行機關 監事機關 議決機關 — 總 會 — 役員會 — 評議員會
5. 監 督	朝鮮總督의 直接監督

資料 : 朝鮮水産業會 機構概要, 1944. 2.

2.3號에 의해 軍政業務代行機關으로 認定받게 되었다.⁴⁹⁾ 여기에 會長에는 當時의 軍政廳農務部水産局長이던 美陸軍少將 「토마스 매클루어」氏가 兼任하고, 緊急한 生活物資 가운데 水産部門의 統制機能과 GARIOA(占領地域 行政計劃)에 의한 水産物資의 配給割當業務를 擔當해 나갔다.⁵⁰⁾ 한편 朝鮮水産業會는 1947年 「金融部」를 新設하고 組合의 所要資金을 取扱하는 同時에 其他 水産物의 販賣, 購買 및 輸出入 등의 業務一切를 掌握해 왔다. 그 名稱을 韓國水産業會로 바꾼 것은 1949年 1月이다.⁵¹⁾

그러나 韓國水産業會는 強力한 權限과 廣範한 機能을 發揮하는 過程에서 業界로부터의 비난과 物議를 일으키게 되어,⁵²⁾ 當時 李承萬大統領은 韓國水産業會에 대한 經濟的 事業을 禁止시킨바도 있었다. 그리하여 한때 韓國水産業會는 指導事業만을 擔當한 적도 있었다.⁵³⁾

49) 美軍政 一般告示 第2.3號는 1945. 10.20에 發布하였으며 「軍政廳, 그 所屬官署, 또는 代行機關은...如何한 必需品이든지 統制함을 得함...」으로 되어 있고, 英軍政 一般告示 第4號 第2項에서는 「朝鮮(Choson) 水産會社를 朝鮮(Korean)水産會社로 하고, 朝鮮政府의 協力機關으로 하며, 唯一한 統制機關임을 茲에 布告함...」으로 되어있다.

50) 農林部, 農林水産行政概觀(1945~1965), 1966, p. 285.

51) 上 同.

52) 上 同.

53) 1949~1951년까지 韓國水産業會는 經濟事業機能이 停止됨.

日帝下 水産團體의 機能과 性格에 關한 研究

中央組織의 이러한 各種經濟事業機能의 喪失은 그것이 곧 水産團體의 下部組織에 있어서까지 全般적으로 機能의 低下와 運營上의 不振을 招來한 큰 要因이 되었던 것은 말할 必要도 없다. 지금까지 水産資金의 融資에 있어서는 韓國水産業會가 當時의 水産資金專擔機關이었던 殖産銀行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여 組合에 轉貸하는 媒介役割을 하고 있었으나 中央組織이 轉貸制度를 廢止하므로 말미암아 各組合은 金融機關과 直去來를 해야만 하였고, 如他 經濟事業에 있어서도 聯合會와 各組合은 中央組織의 利用 便益없이 個別的으로 推進해 나가야 했으므로 많은 混亂과 不便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⁵⁴⁾

水産團體의 中央組織이 本來의 機能을 回復하게 된 것은 1952年 11月 4日 韓國水産業會가 大韓水産中央會로 改編된 다음부터이다. 1953年 5月 7日 政府는 國際聯合司令部와 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事業計劃을 締結하여 水産機資材 및 漁船建造, 水産物施設事業 등의 莫大한 事業을 水産管理委員會⁵⁵⁾로 하여금 取扱하게 하였으나 이것을 모두 中央會가 引受함으로써 終來의 機能回復이 可能하게 된 것이다.⁵⁶⁾ 이로서 大韓水産中央會는 終來의 經濟事業以外에 다른 事業도 新設·擴大시킬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1954년부터 實施한 漁船建造事業, 1955年에 開始한 漁船共濟事業 및 1958년부터 着手한 船員共濟事業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大韓水産中央會의 組織基盤에는 진과 다른 아무런 變動이 없었으며, 漁業組合聯合會와 水産組合이 모두 會員으로 加入될 수 있었다. 漁業組合은 同聯合會의 會員임과 동시에 大韓水産中央會의 會員組合으로도 加入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傘下團體에 대한 一切의 人事權과 業務監督權은 行政官廳에 주어지고 있었던 점은 日帝時와 마찬가지로였다.⁵⁷⁾

中央會를 頂點으로 한 水産團體의 系統組織體系에 變化가 일어난 것은 1961년에 있었던 水産團體統廢合實施 以後이다. 弱體組合에 대한 統合이 시작된 것은 1961年 1月부터이나 1961年 6月 30日을 期해 全國적으로 무려 80個 組合이 統廢合되고, 漁業組合과 中央會와의 사이에 存在하던 漁業組合聯合會를 解散시킴으로써 水産團體史上 約 30年 가까이 存續되어 온 聯合會制度 및 系統組織 體系에 一大革新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⁵⁸⁾ 그리하여 一線組合과 中央會 사이에는 中間機構가 없는 直結體系가 마련되었으며, 一線과 中央은 2段階의 系統體制를 確立하게 되었다. 漁業組合과 水産組合의 二重加入制度는 廢止되게 되었으며, 從前의 聯合會 代身으로는 中央會의 支部내지 出張所가 設置되었다.

1961年度에 이러한 大대의인 水産團體 統合作業이 일어나게 된 것은 當時의 社會的 政治的 變動과 要請에 의해서이다. 즉 5.16革命을 맞이하여 政府는 能率과 秩序 및 國民經濟의 劇期的 發展을

54) 農林部, 前掲書, p. 285.

55) 水産管理委員會는 政府와 UNKRA間에 調印한 韓國水産復興協定에 의해 1953年 5월에 設置된 水産復興事業運營機關임.

56) 水協中央會, 水協調査月報, 1980, 10號, p. 6.

57) 예를 들어 1951年 8月 4日자로 職員任用에 關해 어느 정도 自律權을 認定한 「漁業組合 人事事務處理 要綱」을 示達하였음에도 1961年 7月 24日에 海務廳長이 傘下 各組合에 示達한 「水産團體 人事運營方針의 件」을 보면 「職員, 船員, 技術職에 從事할 職員의 採用時 반드시 水産界學校 出身者를 採用原則으로 하며, 木官의 事前 承認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다(釜山 漁業組合同 例規程, 1945年 以後 참조,).

58) 農協中央會, 農業年鑑, 1962, p. Ⅱ-34.

피한다는方針下에서 産業經濟團體 全般에 대한 統廢合運動이 展開되었던 것이다. 이에 農林部傘下에 단 하여도 다음과 같은 大的인 團體의 統合이 있었던 것이다.⁵⁹⁾

1961. 6. 8. 海務廳의 水産團體整備統廢合要綱 發表

1961. 8. 4. 專賣廳傘下 48個 煙草耕作組合 整備

1961. 8. 15. 農協과 農銀의 統合으로 新農協 創立

1961. 12. 12. 水利組合 695個 整備

2) 解放以後 水産團體組織의 系統體系 및 그 機能의 變化

水産團體의 變化過程을 통해서 系統組織의 成立과 그 發展을 溯及해 보면 1923年 朝鮮水産會의 發足에서부터 始作된다. 1912년에 設立된 日本人漁業者 中心의 朝鮮水産組合이 水産會令의 實施로 朝鮮水産會로 改組되면서,⁶⁰⁾ 傘下에 道水産會를 두게 된 것이 系統水産會成立의 始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團體는 日本과 같이 帝國水産會—都府縣水産會—郡水産會와 같은 3段階의 水産會系統體系로 되지 않고 2段階 系統構造를 形成했던 것이다.

水産會系統組織 以後에 成立된 것이 漁業組合系統組織이며, 이어 水産組合系統組織이 誕生되고, 1940년에는 朝鮮水産聯盟이 創設되어 그 傘下에도 道, 郡 그리고 單位組合水産聯盟을 各各 組織하게 됨으로써 이 역시 全國的인 系統組織網을 形成하게 되었다.

水産組合系統組織은 東海의 정어리漁業이 바야흐로 그 絶頂期에 到達했을 때 다투어 設立된 정어리漁業關係의 水産組合 一部가 朝鮮鰯油肥製造業水産組合聯合會를 設立한 것에서 發端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후 곧 解體되고 말았다는 것은 既述한 바와 같다.

日帝時부터 解放以後에 있어서까지 水産團體系統體系의 主軸을 이루은 것은 漁業組合組織系統이다. 이것은 朝鮮漁業令에 의해 1930년부터 漁業組合을 會員으로 하는 漁業組合聯合會의 設立이 契機가 되고 그후 上位組織인 朝鮮漁業組合中央會의 誕生을 보임으로써 漁業組合—漁業組合聯合會—朝鮮漁業組合中央會로 連結지워지는 3段階 系統組織이 形成된 것이다. 그리하여 全國의 漁業組合을 基本單位로 하고, 臨海12道에 設立된 漁業組合聯合會가 中間連結組織이 되어 여기에 朝鮮漁業組合中央會를 全國統割團體로 하는 確實한 系統組織體系를 確立하게 되었다. 漁業組合系統組織은 그후 各種 水産團體 諸系統組織의 改編이 거듭되는 過程에 있어서도 恒常 水産團體系統의 主軸을 維持해 왔다.

漁業組合系統이 全 水産團體系統의 主流를 形成할 수 있었던 要因은 첫째, 漁業組合의 基盤이 漁業經濟構造의 絶對的 基底層을 形成하는 沿岸零細經營이었으며, 또한 이것은 地區別 組織으로서 全國의 漁村이 그의 組織基盤이 되고 있었던 것이 主된 이유였다. 둘째, 全國의으로 擴大된 방대한 組織網과 分明한 系統體系를 가지고 있는 점이다. 셋째, 他水産團體에 比하여 機能이 活潑하

59) 農協中央會, 前掲書, p. Ⅲ—42.

60) 朝鮮水産組合의 朝鮮水産會에로의 改組 理由에 대해서는 朝鮮水産組合의 沿革과 그 機能의 限界를 理解하여야 하나, 1921年의 日本의 水産會法 實施의 影響을 받아 設立된 朝鮮水産會의 直接的인 設立動機는 所謂「營業者의 漁業을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水産業 全般의 開發에 盡力해야 하나 經費徵收가 難한 朝鮮水産組合은 官의 施設과 相互相應하여 所謂 官民合致에 의해서만 水産業의 改良發達 目標가 大成할 것이므로 此第에 公共의 強制力을 갖는 水産團體改編의 不可避性」을 論한 1924年 朝鮮之水産의 林駒生 寄稿가 參考된다.

고 多樣性을 가지며, 漁業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높았던 점, 네째는 制度的 保護와 政策的 支援이 他 系統보다 컸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漁業組合系統組織에 있어서 各級 組合間의 相互關係는 單位漁業 組合은 그가 所屬되어 있는 聯合會를 通하여 起債申請을 하고 聯合會는 中央會로부터 管内組合全體 分の 要求資金과 所要物資의 供給, 斡旋 등을 지원받음으로써 事業上의 相互利用關係를 成立시키 나가는 한편, 聯合會, 中央會 및 所屬組合은 그들 相互間의 發展을 위한 各種의 全國的인 活動과 指導業務를 擔當해 나가는 指導機能을 通해 相互補完的 關係를 유지해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所屬會員組合은 所屬團體의 運營에 直接 間接으로 參與함으로써 一定한 權限과 義務를 지며, 構成主 體로서의 役割을 發揮해 나갔다. 예를 들어 朝鮮漁業組合規則에서는 聯合會의 構成分子인 漁業組合은 聯合會運營에 必要한 經費負擔의 義務를 져야 하는 反面에, 聯合會의 監事被選權이 부여되어 있 었고, 總會를 通하여 聯合會의 經費豫算, 財産管理, 規約의 開廢 등에 關한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는 規定을 두고 있었다.⁶¹⁾ 그리고 朝鮮漁業組合中央會에 대한 그의 會員인 漁業組合 및 同聯合會의 運營參與는 會長, 理事 및 監事 등 任員의 被選權, 監事役任權, 議決機關構成權, 議決權 등의 權限을 行使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⁶²⁾

系統組織間의 이와 같은 關係는 앞에서 밝힌 中央會組織의 機能을 通해서도 充分히 理解되지만 特 히 組合 信用事業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實例로서는 1934年과 1942年의 「朝鮮의 水産」에서 밝히고 있는 漁業資金供給系統圖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1933年에 漁業組合은 所要資金 3,230千圓을 漁業組合聯合會를 通해서 起債하였고, 나머지 18%(910千圓)는 金融組合聯合會 혹은 銀行을 通해 調達하였으며,⁶³⁾ 1941年에는 漁業組合의 系統利用率이 더욱 늘어나 所要資金(21,938千圓)의 거의 全 額(21,700千圓)을 轉貸借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表 3〉 참조).⁶⁴⁾ 이때 聯合會는 銀行 혹은 金融組合聯合會를 通해 借入한 資金을 漁業組合에 供給하며, 中央會는 低利資金의 融通 및 聯合會의 借入條件改善 등을 위해 政府 혹은 金融機關과의 사이에서 媒介機能을 發揮하고 있었다.

3) 系統組織의 段階構造와 聯合會組織의 意義

聯合會組織의 意義와 系統組織構造의 段階區分은 單位組合의 經濟的 機能과 經營機能의 限界를 克服하고 그들의 機能上의 脆弱을 補完하며, 單位組合間의 競爭激化를 防止하기 위해 必要한 規模의 經濟的 有利性 즉 規模效果를 求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單位組合相互間의 理解와 必要에 의해 自主적으로 成立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要請에 의해 成立된 聯合會組織과 系統組織은 첫째, 單位組合의 業務代行, 둘째, 單位組合의 機能補完, 셋째, 單位組合間의 重復業務 및 業務磨擦의 調整, 相互競爭의 防止 등을 發揮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며, 이것이 自主적으로 成立되었을 때 系統利用率은 極大化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系統組織의 段階構造가 위에서와 같은 必要性에 의하여 單位組合이 1次聯合, 2次聯合의 形態를 取해 나갈 때 그것은 2段階 혹은 3段階의 構造를 決定하게 되며, 이때 構造決定의 論理的 基準이 되는 것은 單位組合의 事業 性格, 單位組合이 實施하는 事業의 市場條件 및 單位組合經

61) 朝鮮漁業組合規則(1929. 12. 10 制定), 第55條 등 참조.

62) 朝鮮漁業組合中央會定款(1937. 3. 1), 第12條 및 第18條 등 참조.

63) 朝鮮總督府, 朝鮮の水産(1934), 1935, p. 29.

64) 上掲書, p. 29.

營規模의 平均的 分布 등이 된다. 이것을 소위 協同組合系統組織의 段階構造決定 3要因이라 한다.

聯合會組織과 系統組織構造의 이상과 같은 意義에도 不拘하고 日帝水産團體는 그의 理論的 成立要件을 無視한채 政策的으로 이의 成立과 發展이 誘導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單位組合의 系統組織 利用率은 信用事業을 除外하고는 極히 低調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大部分의 中央組織은 그의 機能을 單位組合에 대한 統制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單位組合의 存在意義를 聯合會存立을 위한 經費捻出基盤으로서 밖에 評價되지 않았던 것이며, 이러한 機能上的 矛盾을 끝내 是正할 수 없었던 制度的 缺陷이 가장 큰 理由가 되고 있었다.

IV. 水産團體의 性格

1. 日帝下 水産團體의 一般的 性格規定

韓日合併後 日帝는 韓國에 대한 植民地政策을 展開함에 있어 그의 政策的 基調를 自國의 工業化 促進을 위한 食糧 및 工業原料供給地로 삼는 同時에 工產品 販賣市場으로서 利用코자 했던 것이므로 여기에 水産業이 政策的 育成産業으로서 重要視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日帝의 植民地水産政策은 그의 基本目標를 水産物增産과 그의 持續的 再生産基盤構築을 위한 漁村의 維持經營에 두게 된 것이다. 韓日合併以後 水産團體制度의 樹立과 그의 整備 및 強化, 그리고 漁村에 대한 漁業組合의 普及活動은 이러한 日帝의 植民地水産政策을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登場된 手段이다. 日帝가 韓國漁村에 대하여 水産團體組織을 통해 成就코자 意圖하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水産團體를 漁村에 廣範하게 普及시킴으로써 植民地水産政策의 下請의 役割을 強化하고 이를 水産行政의 補助機關으로 活用하는 데에 있었다. 水産業分野에서 團體運動의 自生的 發達基盤이 未成熟하였던 日帝初期에 서둘러 水産團體制度를 樹立하고 그의 設立을 官主導로 誘導하면서 推進시켜 나간 日帝의 底意가 이 以上에 두어졌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時代의 背景下에서 設立이 獎勵되고, 그의 育成 發展이 保護 助長된 水産團體는 「官僚統制型의 半官半民的 性格」을 濃厚하게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內容은 漁業令에 의한 水産團體制度和 朝鮮漁業令에 의해 設定된 水産團體統制에 관한 規定 등을 통해서 잘 反映되고 있다.

특히 朝鮮漁業令 第58條에서 「漁業組合, 漁業組合聯合會, 水産組合 및 水産組合聯合會의 決議 또는 役員의 行爲는 本令에 依據하여 發하는 命令에 의해 朝鮮總督은 다음과 같은 處分을 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그 다음을 ① 決議의 取消, ② 役員의 解職, ③ 解散 등으로 들고 있는 것은 日帝水産團體의 官僚的 性格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法律的 表現인 것이다. 이외에도 水産團體의 議決機關 構成員의 任命, 役員의 任免 등의 法律規定을 두어 團體를 官의 完全支配下에 隸屬시켰으며, 특히 共同施設事業 등을 營爲함에 있어서는 出資制度를 認定하지 않고 經費負擔制로 함으로써 團體의 事業選擇과 그의 實施에 있어서 漁民의 展開를 크게 制限시켜 왔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水産團體는 經濟的 事業團體로의 成長이 抑制된채 恒久的인 日帝의 植民地統治機關으로 머물고 말았다.

따라서 日帝時代 全般을 통해서 存續해온 水産團體의 性格을 한마디로 規定하는 데는 團體의 種類와 그의 法律根據가 各々 相異한 것이 많기 때문에 問題가 있으나 一般的으로 만해서 이들을,

① 半官半民的 團體

② 漁民의 經濟的 問題解決을 爲해 成立된 自生的 團體가 아닌 植民地統治目的을 爲한 手段으로서 成立된 團體

③ 經濟團體的인 性格과 行政指導를 爲한 政府의 補助機關的 團體로서의 兩面性을 지닌 團體

④ 出資制가 아닌 經費負擔原則을 취함으로써 協同組合體制를 갖추지 못한 前近代的 事業團體였다는 점 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

2. 漁業組合 및 그 系統組織의 性格

1) 漁業組合의 性格

漁業組合系統組織은 漁業組合과 漁業組合聯合會 및 漁業組合中央會로 構成되는 水産團體를 말한다. 여기서 漁業組合은 漁業組合系統組織의 末端 基本單位였으며, 全體水産團體組織의 根幹을 이룬 團體였다. 漁業組合은 面 또는 面內의 漁村部落을 業務區域으로 하는 地區別 組織이었으며, 日帝가 漁村維持經營의 中心機關으로 삼기 爲하여 가장 重點을 두어 普及시킨 代表的인 水産團體였다. 그리하여 漁業組合에 漁業權管理機能을 中心機能으로 부여하였으며, 必要한 共同施設事業(組濟事業)도 하게 하였다. 當時의 漁業은 沿岸漁業이 全部였으므로 沿岸漁業의 發達과 그의 生産增大는 곧 全體漁業의 生産增大를 意味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爲해서는 漁村의 維持와 그 向上이 前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日帝는 特히 이러한 漁業組合의 普及에 對해서는 別다른 關心과 努力을 보였던 것이다.

그 實例로서는 漁業組合補助規則을 制定하여 新設과 事業을 獎勵해 나간 것이라든가, 指定漁業組合制度를 實施하여 役員의 任命權을 官이 쥐고 人件費의 補助와 業務指導를 擔當해나간 事實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漁業組合에 對한 漁村維持經營의 中心機關으로서, 그리고 植民地水産行政의 末端單位로서의 役割強調을 피하기 爲하여 「漁業組合이 設立된 地區內의 漁民은 當然히 組合員이 되는 것으로 본다」⁶⁵⁾라는 法律規定을 두어 全漁民을 組合員化하는 組合加入 強制化를 피했으며, 財政의 支援과 役員의 任免權, 官選議員의 配置, 議決權의 取消 등을 통한 組合運營의 實權을 官이 모두 掌握하는 바가 되었으므로 漁業組合은 官僚統制가 徹底하게 浸透된 半官半民的 組織으로서의 性格을 濃厚하게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漁業組合은 漁業의 發達과 漁村社會構造의 變化에 따라 機能團體로서의 適應力과 役割이 重視되므로 日帝中期부터는 團體制度의 改正을 통해 經濟事業活動을 強化해 나갔다. 그리하여 漁業組合의 共同施設事業關係規程의 整備를 보게 되고, 그 結果 漁業組合은 初期와는 달리 經濟事業團體로서의 性格도 아울러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出資制度를 導入하지 못한 漁業組合은 名實相符한 經濟事業推進主體로서의 機能 擴大를 포함에 있어서는 制度的으로나 實際的으로 많은 制約을 받게 되었다.

2) 漁業組合聯合會의 性格

漁業組合을 會員으로 하여 組織된 漁業組合聯合會는 系統的인 側面에서는 漁業組合과 漁業組合中

65) 朝鮮總督府, 朝鮮の水産(1942), 1943, p. 20.

中央會와의 사이에서 兩者의 機能擴大를 위한 仲介機能을 주로 擔當하고 있었다. 特히 漁民과 漁業組合에 대한 資金貸付와 共同購入事業에 主力하고 있었으나 聯合會의 主된 役割은 中間系統組織으로서의 媒介機能이 大部分이었으며, 이러한 媒介機能도 漁業組合—地方官署, 漁業組合—金融機關, 漁業組合—中央會와의 사이를 連結시키고 그 關係를 긴밀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機能이었다.⁶⁶⁾

그러나 「所屬組合의 目的을 達成시키기 위하여 必要한 施設의 運營을 行함을 目的으로 한다」⁶⁷⁾의 目的規定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漁業組合聯合會는 그의 目的達成을 위한 施設로서 金融事業, 委託販賣事業, 共同購入 등의 經濟的 事業을 獨自의 遂行할 수 있는 經濟的 主體로서의 性格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實際로 이와 같은 事業實施의 資料는 朝鮮水產業會의 資料를 通해서도 確認된다.⁶⁸⁾ 이 점에서 있어서는 漁業組合과 다를 바가 없었다.

漁業組合聯合會는 中央組織의 全體系統組織에 대한 機能과 類似한 機能을 가지고 地域內 全漁業組合業務를 指導하고 統制해 나간 中間統制團體였던 점이다. 이것은 聯合會의 設立目的 중의 하나이며, 戰爭末期 指定集荷機能의 부여를 통하여 이러한 機能은 더욱 強化되었다. 그러나 聯合會의 會員組合에 대한 人事 및 運營의 支配權은 모두 官의 掌握下에 있었으므로 전혀 미치지 못하였다.

制度的인 側面에서 漁業組合聯合會는 行政補助機關으로서, 그리고 官僚型 統制團體로서의 性格이 漁業組合에 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否認할 수 없다. 즉 聯合會의 機關構成에 있어서 最高經營者인 理事長 및 理事의 任免權을 朝鮮總督이 가진 것이라든지,⁶⁹⁾ 組合의 代表者로 構成되는 總會에 特別議員制度를 두어 所屬組合數의 1/3 以上の 議員을 道知事가 任命하도록 하고,⁷⁰⁾ 聯合會의 財産은 朝鮮總督이 監督하며, 事務에 대해서도 何時든지 監督上 必要한 경우에는 官이 命令이나 處分을 할 수 있게 한 것⁷¹⁾ 등이 이를 證明하고 있다.

3) 漁業組合中央會의 性格

官僚的 團體로서의 性格을 지닌 점에 있어서는 漁業組合系統의 中央機關이었던 朝鮮漁業中央會가 더욱 強하였다.

朝鮮漁業組合中央會는 朝鮮漁業令에 의한 水産團體制度 테두리 안에서 漁業組合과 漁業組合聯合會를 會員으로 하여 社團法人으로 設立된 中央統制團體였으며, 漁業組合系統組織의 唯一한 中央組織인 뿐만 아니라 最上位의 機關으로 存在하고 있었다. 여기에 官僚的 統制가 強化되고 있었던 實例는 中央會의 最高議決機關인 評議員會를 構成함에 있어서 25名의 評議員中 當然職議員인 漁業組合聯合會의 代表를 除外하고는 各道漁業組合代表中에서 會長이 評議員을 任意로 選任할 수 있었으며, 評議員會의 選任을 거친 會長과 理事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반드시 받아야만 했다.⁷²⁾ 그리고 評議員會의 議決을 거친 事項이라도 經費賦課, 事業計劃, 諸規定의 改廢 등 重要한 것은 모두 總督府의 認可를

66) 朝鮮總督府, 朝鮮의 水産, 1934, 1942, 참조.

67) 朝鮮漁業令, 第50條 第2項.

68) 朝鮮水産業會, 水産月報, 2號(1949年 1月) 참조.

69) 朝鮮漁業組合規則, 第55條, 참조.

70) 朝鮮漁業組合規則, 第52條, 참조.

71) 朝鮮漁業組合規則, 第58條~第59條, 참조.

72) 朝鮮漁業組合中央會定款, 第12條, 참조.

발도록 하였다, 이러한 諸規定으로 보아 中央會의 官僚統制는 單位水産團體보다도 훨씬 強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朝鮮漁業組合中央會는 會員에 대한 指導·調整의 任務以外에 共同購買, 資金의 貸付, 委託販賣 事業을 實施하는 經濟事業의 獨自의 主體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事業財源은 出資制가 아닌 會員의 經費負擔에 의하거나 政府의 補助 혹은 事業의 獨占權을 얻어 행하고 있었으므로 政府의 支配와 統制는 當然한 것이다. 또한 中央會는 系統事業의 擴大를 통한 會員機能의 補完을 위해 存立한 것이라 기 보다는 全國組合을 指導·統制하는 것을 主任務로 하는 團體의 統制機關의 性格이 濃厚하였다. 즉 中央會는 組織系統側面에서 最上位의 組織으로 되어 있었으며, 單位組合에 대하여는 2重加入制를 採擇함으로써 道聯合會 機能을 弱화시키고 聯合會와 單位組合을 同時에 支配해 나간 것이다. 그리하여 單位組合의 系統組織에 대한 經費負擔義務를 加重시키는 한편, 單位組合의 中央會運營에 對한 參與와 事業利用에 대한 主體性을 制限시켜 나갔다.

3. 水産組合 및 그 系統組織의 性格

水産組合 및 同聯合會는 漁業組合 系統組織과 同一法體系下에서 設立된 團體였으므로 官僚統制的 性格은 漁業組合과 다를 바가 없다. 즉 水産組合의 設立은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만 하였고, 組合의 經費豫算과 賦課金의 徵收方法은 道知事의 承認을 얻도록 하였으며, 官은 何時라도 水産組合과 同聯合會의 事務나 財産狀況에 대하여 報告를 받거나 檢査權을 發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⁷³⁾

한편 1934年의 組合規則改正을 통해서도 水産組合에도 指定組合制度를 創設함으로써 水産組合의 官僚統制的 團體로서의 性格은 더욱 強化시켰다.

水産組合에 法人格을 與賦하고 信用·販賣·購買 등의 事業實施를 許用한 점에 있어서는 漁業組合 系統組織과 差異가 없으나, 組合自體의 營利事業을 禁止시키고, 組合의 設立目的을 漁業의 改良發達에 두고 있는 점은 水産組合이 公共機關의 事務一部를 分任·遂行하는 公法人의 性格을 띤 團體로 볼 수 있어 이 점에서 漁業組合의 法人性과 差異가 있다. 「加藤」은 같은 法人團體이면서도 이러한 점에서 水産組合과 漁業組合의 法人性을 區別해야 할 것이라고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⁷⁴⁾

이와 같이 日帝下 水産團體는 그것이 單位組合과 聯合會組織을 不問하고 共通적으로 지닌 屬性이 植民地水産政策의 末端推進單位로서의 行政補助機關의 團體였다는 점과, 官僚統制가 徹底하게 浸透된 官僚指導型 半官半民의 團體였다고 하는 점이다. 漁業組合은 漁村維持經營의 中心機關으로서, 水産施策의 對象이어야 할 沿岸漁場의 管理主體로서, 漁村指導事業에 대한 推進單位로서의 役割을 통해 充實한 植民地水産政策의 下請機關이 되고 있었으며, 水産組合은 不特定 多數漁民을 위한 水産業開發과 試驗調査의 實施, 營業上의 弊害調整의 役割을 맡음으로써 水産行政의 公的 任務를 分擔하고 있었다. 그리고 漁業組合聯合會, 水産組合聯合會 및 其他 水産團體의 中央組織도 構成員의 經濟的 地位의 改善을 위해 系統事業의 機能分화와 調整 및 單位組合의 機能限界를 克服하기 위한 本然의 機能과 任務보다는 下部組織의 統制團體로서 君臨하고 있었으며, 水産行政의 廣範圍한 業務를 擔當해 나간

73) 水産組合規則, 第4條, 第22條 및 第41條 참조.

74) 加藤眞孝, 朝鮮漁業制度要論, 참조.

行政外廳的 機關으로서 存在하고 있었다.

그러나 水産團體는 各各 그들 固有의 目的達成을 위한 副隨的 機能으로서 經濟事業도 實施하고 있었으며, 日帝中半以後부터는 이러한 機能의 進展을 크게 보이고 있었던 점에서 經濟團體로서의 性格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特히 漁業組合과 水産組合의 經濟事業은 매우 活潑하였으며, 政府는 이의 助長에 積極的인 施策을 講究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行政補助機能이 어디까지나 中心的 機能 이 되고 있었으므로 水産團體의 經濟的 機能은 相對的으로 弱화되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出資制가 아닌 經費負擔原則에 의해 經濟事業이 展開되고 있었으므로 事業의 推進과 擴充에 있어서는 많은 制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日帝下 水産團體가 經濟團體로서의 進展을 꾀하는데 있어서 根本的으로 해결할 수 없는 制度的 矛盾과 機能發揮上의 脆弱點이 된 것이다.

V. 結 言

日帝下 水産團體는 韓日合併을 契機로 創設된 以來 半世紀에 가까운 長久한 期間동안 存續해 오으로써 우리 나라 漁村에 있어서 自生的인 漁民組織의 成熟과 近代의 水協制度의 發展을 阻止해왔던 것이다.

本論의 目的은 이와 같은 日帝下 水産團體가운데 日帝初부터 1962年 水協의 發足前까지 있었던 漁業組合과 水産組合系統의 水産團體를 中心으로 그의 變遷過程과 機能展開方式을 考察함으로써 日帝下 水産團體의 基本的 性格과 그 特質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가급적 「日帝下의 모든 公式組織을 다같이 植民地統治手段이었을 것이다」라는 推測과 固着觀念에서 벗어나 團體 그 自體가 發揮해온 機能과 運營, 役割에 重點을 두어 團體規律制度和 自治法規 및 事業實態資料 등을 活用하여 이를 多角的으로 檢討하였던 것이다.

그 結果 여기에서 結論的으로 말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日帝下의 水産團體는 그의 成立背景과 設立의 根本趣旨가 말해주듯이 그것이 完全消滅을 보인 最終段階에 이르러서까지도 植民地水産政策遂行을 위한 末端行政補助機關의 性格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日帝下의 水産團體는 漁民의 便益과 漁村의 維持經營을 위해 經濟事業 등을 共同實施해 왔으며, 그것이 日帝中期以後부터는 한층 活潑히 推進되고 있었던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政府機能의 分擔과 漁村의 生産性 維持를 통한 持續的 收奪을 強化하기 위한 公共的 團體 내지는 同業者組合以上の 性格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事實이다.

日帝下에서 存在해 왔던 水産團體로서는 漁業組合, 水産組合, 水産會, 水産聯盟 등 系統組織의 單位機關과 中央組織 등으로 數多한 形態와 種類가 있었던 것이지만 水産團體制度의 變遷過程에서 이들은 漁業組合과 水産組合系統의 組織으로 모두 吸收되었으며, 中央組織으로는 朝鮮水産業會를 誕生시켰다. 이 時期가 日帝末期인 1944年이었다. 따라서 漁民 및 漁村과의 가장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協同組合的 團體로 끝까지 存立해 온 것은 上記 두 系統團體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日帝下의 水産團體制度는 事實上 上記 두 系統團體에 대한 制度였던 것이며, 그것은 크게 3段階의 過程을 거쳐 變化되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다.

日帝下 水産團體의 機能과 性格에 關한 研究

그 第1段階는 水産團體制度의 創設과 初期水産團體의 設立 및 그의 活動을 保障한 所謂 漁業令 時代이며, 다음의 段階는 水産業發達에 照應하여 水産團體組織과 機能의 展開에 大幅의 變化를 가져다 준 朝鮮漁業令時代가 된다. 水産團體는 日帝末期에 와서 國家의 統制政治의 實施로 政府隸屬의 團體가 되고 말았으며, 이 以後로 政策的 機能의 強化와 더불어 漁民統制團體로서의 性格이 體質化 되고 말았다. 水産團體制度에 後退를 가져오고 그의 經濟統制團體化를 促求한 이 時期가 第3段階에 該當되며 이것은 또한 그의 最終的 段階가 되었다.

同一法體制와 政治 테두리 內에 있었으면서도 日本自國內의 水産團體에 대해서는 이미 1933年의 漁業法改正을 통해 漁業組合의 協同組合體制(出資制와 有限責任制度)로의 改編을 보게 하였으나 植民地朝鮮에 대해서 만든 그러한 措置를 留保한채 오히려 初期의 水産團體 以上으로 政府의 下請機關化했다는 것은 日帝의 우리 나라 水産團體에 대한 政策的 差別이 컸다는 것을 뜻한다.

水産團體는 漁業組合과 水産組合 및 그들의 聯合組織이 다같이 經濟事業을 實施해 왔으며, 이것은 朝鮮漁業令의 實施以後 더욱 促進되어 水産物共販事業과 信用事業 및 購買事業의 3大經濟事業을 擴大시켜 나갔을 뿐 아니라 漁業組合은 거의 全組合이, 그外 水産組合과 聯合會組織에 있어서도 이들 事業을 重點적으로 實施해 왔던 것을 볼 수 있다.

地區別組合이었던 漁業組合은 처음부터 漁業權管理團體로 出發했던 것이므로 漁場管理機能은 그의 中樞的 地位에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全國의 漁村을 共同體의 支配해 나갔다. 水産組合은 特定 漁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沿近海漁業 全般의 改良과 發達의 圖謀를 그의 設立趣旨로 삼고 있었으며, 餘他의 事業도 重視하고 있었다. 그러나 漁業組合에 比하여는 經濟事業의 制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各種 水産團體는 한결같이 行政機能을 分擔·遂行하고 있었으며, 그 中에서도 日帝中期以後의 指定組合으로서의 機能, 水産物集荷機能, 水産物資의 配給統制機能 및 漁村振興事業 등이 強化化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水産團體의 經營에 壓迫이 招來되었음은 물론 水産團體는 目的의 轉置現象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요컨대 日帝下의 水産團體는 漁民의 組合員加入이 強化化되고, 團體의 運營에 있어서 官選經營者와 議決機關을 配置하는 등 官의 支配와 統制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官僚統制的 團體였던 것이며, 漁場管理機能, 行政機能, 그리고 經濟事業機能 등을 同時에 遂行해 나가는 多面的 機能을 갖는 대단히 複雜한 團體의 性格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水産團體의 2重性과 機能의 複雜性 및 矛盾性으로 말미암아 日帝下의 韓國의 水産團體는 近代의 漁民經濟團體로서 成熟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